

월간
재정포럼

2021. March_Vol.297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3

권두칼럼

자본이득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제언 | 오 윤

현안분석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 | 권성오

국제비교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직원 유지 크레딧 및 각 경제 소득 세무처리 지침 발표 외

CONTENTS

권두칼럼

자본이득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제언 | 오윤 02

현안분석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 | 권성오 08

국제비교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28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직원 유지 크레딧 및 각 경제 소득 세무처리 지침 발표 외 44



자본이득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제언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조직화된 권력은 조세제도와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정부재정 조달을 위해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는 민의에 의해 형성된 법규를 그 정당성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헌법은 조세의 부과상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의 형성에 대해 입법부에 많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조세법규의 입법과정은 정치작용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제도의 이론적 타당성 이외에도 여러 계층과 집단 간에 충돌되는 이해 조정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순자산 증가설적인 소득세제의 구축

소득세는 18세기 말 유럽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소득의 총금액에 대해 일정률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제도 집행의 현실적인 방안이었던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과세대상은 그런 원천이 있는 곳에 설정하여야 한다는 ‘소득원천설’이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후 실질적인 담세력은 경제적으로 순소득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포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소득에 대해 과세하자는 ‘순자산 증가설’이 실제 그 이론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으로 마련되면서 힘을 얻게 되었다. 1980년대 이래의 ‘넓은 세원 낮은 세율(broaden tax base, lower tax rate)’의 구호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표현하고 있다. 순자산 증가설적인 소득세제의 구축은 실질적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추구하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 이래의 소득세이론과 동 이론의 실제 집행이 가능하게 된 오늘날 기술발달 수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아울러 빈틈없는 공평한 과세를 통해 세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서의 자본이득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양도소득이 있다. 양도소득은 강학상 ‘자본이득(capital gain)’에 해당한다. 양도소득 또는 자본이득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순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통상 일시적인 소득이어서 소득세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바로 과세대상이 되지 못하고 순자산 증가설에 터잡은 제도가 확산되면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과세대상 자산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세법상 양도소득이 일찍이 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되기도 하였지만, 제대로 과세되기 시작하는 것은 1970년대 부동산투기억제세가 소득세로 흡수되면서부터이다. 초기에는 부동산만 과세되다가 이후 주식 등으로 그 과세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자본이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구미권 국가들에서 뒤늦게서야 과세되기 시작한 것은 사인 간의 거래에서 그 과세의 근거를 찾아야 하는 집행 차원의 어려움 이외에도, 국민경제 순환구조 중에서 분배되는 소득(income)의 한 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이득(gain)이라는 인식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애초 정책세제로 자리매김되면서 도입된 것이어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증과세, 비과세·감면 등의 제도적 응용이 빈번하게 있어 왔다. 오늘날 우월한 조세이론으로 존중되고 있는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에서 볼 때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 간에도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의 주요 요소를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소득세법」상 자본증권 및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무상이전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두고 있으면서 아울러 그에 대한 예외적 세율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높

.....

오늘날
우월한 조세이론으로
존중되고 있는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에서 볼 때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소득세법」상
자본증권 및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 또는 실질적
형평의 고려보다는
경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중점을 두는
제도를 갖고 있다.**

은 세율로 중과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양도소득은 그 원천이 채권, 주식과 같은 자본증권이든 부동산이든 자본소득(capital income)의 하나인 자본이득이다. 자본이득은 채권, 주식 및 부동산과 같은 자본자산으로부터 기대하는 미래소득(이자, 배당, 임대사업소득)의 현재가치 변화에 따라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자, 배당소득의 원천이 되는 채권 및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임대사업소득의 원천이 되는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와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소득세법」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관대한 과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저축에서 투자로’의 방식에 의한 국민재산 형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이다. 2023년부터는 모든 주식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전면과세의 충격을 완화할 일시적 필요에 의해 1인당 연간 5천만원의 공제가 인정된다. 세율은 20%이다. 이는 공제 없이 14%의 세율로 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와 대비되는 것이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도 금융투자소득에 통합하고 그 금융투자소득을 14%이든 20%이든 하나의 세율로 과세하면서 소득금액 계산상 양도손익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도 통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제도는 해당 자본증권 발행지의 국내외 여부를 불문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에 대해 중과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하는 것은 보유 시 재산과세를 강화하는 것처럼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로 시장 매도물량의 축소를 가져와 가격안정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곤란하게 만든다. 부동산 보유과세를 일관성 있게 강화하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투자소득 또는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동산은 자본증권과는 달리 주로 그것이 소재하는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반영되어 결정되며 그 지역의 경제적 가치는 해당 지역사회 전체의 기여에 의하여 좌우된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보유기

간 중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해 보유세의 납부로서 보답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상 자본증권 및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 또는 실질적 형평의 고려보다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더 중점을 두는 제도를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앞서 언급한 제도적 사례는 상충하는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의 부여에 관한 논의를 통해 비교적 잘 알려진 것들이다.

「소득세법」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때에 무상이전을 받은 자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무상이전한 자가 보유한 기간 중 증가한 자본이득 부분을 공제하는 규정이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step-up basis 조항). 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본인의 무상취득 시 시가를 필요경비의 하나로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무상이전하는 자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의 자본손익에 대한 과세는 영구히 배제되게 된다.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에 중대한 비과세의 영역이지만 명시적으로 ‘비과세’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자본이득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제언


자본이득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한다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받는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는 자본이득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이름으로 유사하게 과세되는 효과가 도출되므로 현행 세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적절한 구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산의 취득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과 처분에 의해 지출한 가액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자본이득 부분은 어느 단계에서든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step-up basis 조항은 양도소득과세제도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단순한 과세이론뿐 아니라 자산가격 인플레이로 계층 간 경제력의 편차가 심

.....
**자본이득은
 자본소득의 하나로서
 그 성격에 부합하게
 다른 자본소득과
 일관된 과세체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아울러
그간 배제되어온
자산의 무상이전 시
자본이득과세도
허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지는 현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자본이득은 빠짐없이 과세되도록 세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자본이득은 자본소득의 하나로서 노동소득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그 성격에 부합하게 다른 자본소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간 배제되어온 자산의 무상이전 시 자본이득과세도 허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무상이전과세제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인가 일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의 모색은 자본이득과세를 선택하고 무상이전과세를 포기한 일부 영연방국가들, 부의 무상이전과세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체제전환국가들, 부의 무상이전을 ‘행위’에 대한 과세로 정립하고 고액의 공제를 인정한 미국의 사례들을 연구함과 아울러 자본이득과세와 무상이전과세의 이중과세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들을 고루 연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

권성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sokwon@kipf.re.kr)

I. 들어가는 글

최근 몇 년간 소득세 최고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었다. 올해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적용 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3%포인트 인상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수확대 및 재분배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권성오·권성준, 2020). 납세자는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노력(unobserved effort), 직업 선택(career choices), 납세순응도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이에 대응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하여 경제주체가 선택하는 소비 및 생산이 비효율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Saez et al.(2012)에 따르면, 고소득층이 소득세율 인상에 대하여 노동공급 조절 등 실제적인 경제행위 변화로 대응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그들의 과세소득 탄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조세회피 및 탈세 수단에 대한 접근도가 높기 때문이며, 따라서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효율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의 택스갭(tax gap)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택스갭이란,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이론적 세금부담과 실제 세금부담 간의 격차로 정의되는데, 택스갭이 클 경우 납세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안중석 외(2017)는 무작위 세무조사 자료와 국세청 경정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의 택스갭이 2011년 기준으로 6조 7천억~8조원 수준임을 보였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고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이나 현금거래의 비중이 높은 사업이 많아 과소신고 갭(gap)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당국은 전통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납세순응도 제고를 달성

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경우 제한된 인적자원, 조세저항 등의 한계가 있고, 성실사업자 우대와 같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는 소수의 납세자만 이용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11년에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기존 정책의 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와 사업자가 아닌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독특한 제도이다(구재이, 2015).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개인사업자 및 이들과 유사한 성격의 소규모 법인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신고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사전검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성실신고의 이행을 유도한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정착시키고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및 제재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지원제도로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세금신고·납부기한의 연장 등이 있으며, 제재수단으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가산세와 세무조사, 세무대리인에 대한 과태료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소개하고 이에 대응하는 개인사업자의 행태에 대해 분석한다. 제Ⅱ장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국내외 성실신고유인제도를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연간 총수입금액을 조정하는지를 분석한다.

Ⅱ. 성실신고확인제도

1. 제도 개요

가. 제도 배경 및 대상

대규모 개인사업자 및 이들과 유사한 소규모 법인의 경우 대부분 세무조정표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의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¹⁾ 따라서 수입금액의 누락 여부와 필요경비 계상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수행되지 않으면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²⁾

**본고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국내외 성실신고유인
제도를 살펴보고,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성실신고확인
제도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은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4.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5.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2) 대규모 개인사업자가 원칙적인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방식 대신 기준 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상대적 비교를 통해 추계방식이 세금부담의 측면에서 유리하면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제출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재무제표 감사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의 사전 확인을 통해 세원양성화 및 징수비용 절감을 달성하고자 한다.

<표 1> 성실신고확인 신고자 규모 및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성실신고확인 신고자(A) ¹⁾	67,937 (4.1)	132,602 (95.2)	138,095 (4.1)	144,985 (5.0)	150,559 (3.8)	208,670 (38.6)	213,059 (2.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B)	4,564,682	5,052,552	5,482,678	5,874,671	6,393,891	6,911,088	7,469,635
성실신고확인 신고비율 (A/B) ²⁾	1.5	2.6	2.5	2.5	2.4	3.0	2.9

주: 1)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2) 성실신고확인 신고비율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통계가 필요하나 자료 확보가 어려워 대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통계 활용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1-1. 각 연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재무제표 감사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의 사전 확인을 통해 세원양성화 및 징수비용 절감을 달성하고자 한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이 종합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³⁾ 특히,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비용 처리의 적정성 검토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현금영수증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으로 수입금액은 어느 정도 투명하게 드러났지만, 비용 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에서 일일이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 신설된 이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금액이 점차 인하되면서 제도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 사업자도 제도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표 1>을 보면 2019년 기준 성실신고확인신고자는 약 21만명에 이른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와 ②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을 의미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의미하며,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 ② 제조업, 음식 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7.5억원

3) 이때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다.

- ③ 부동산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5억원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1)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법인 전환 후 3년 이내)⁴⁾ 및 2)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규모 법인을 의미한다.

- ① (업종)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 권리 대여, 이자, 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
- ② (근로자 수) 해당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③ (지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각각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⁵⁾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표지와 구체적인 성실신고확인 내용이 담긴 첨부서류로 구성된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 사업장 기본사항, 주요 사업내역 현황,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 수입금액 검토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에는 성실신고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을 종합적으로 서술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의 각 항목에 대하여 ‘예/아니오’로 확인하여 서명한다.⁶⁾

나.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정착시키고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 확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정착과 납세자의
조세저항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4)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기업은 제외한다.

5)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1일~6월 30일까지 한다.

6) 예시: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표 2>를 보면,
2011년에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설된 이후 조세지출
감면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2020년 (전망)
소득세	신설	502	491	496	1,012	1,049	1,095	1,160	1,898	1,998
법인세	-	-	-	-	-	-	-	0	46	48
합계	0	502	491	496	1,012	1,049	1,095	1,160	1,944	2,046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⁷⁾ 공제세액의 한도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이다. <표 2>를 보면, 2011년 본 제도가 신설된 이후 조세지출 감면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조세지출 감면규모는 2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 공제규모는 2012년 502억원에서 2015년 1,01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2020년에는 1,99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공제는 2018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에는 48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외에 신고·납부기한 연장,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의 지원제도가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이 연장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⁸⁾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된다.⁹⁾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도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된다.¹⁰⁾

다.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가산세와 세무조사,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과태료, 직무정지 등이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

7) 단,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금액(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과세표준(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전액 추징된다.

8) 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9)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가 공제되고,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표 3>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제재

허위 확인금액	징계 양정
5억원 이상	직무정지 1년~직무정지 2년
1억원 이상	직무정지 3월~직무정지 1년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억원 미만	견책~직무정지 3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구재이(2015), p.103 <표 II-8>

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종합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하게 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¹¹⁾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과태료, 직무정지와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허위확인 금액 크기에 따라 직무정지 3개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직무정지 2년까지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2. 국내외 성실신고유인제도

가. 우리나라의 성실신고유인제도

본 절에서는 납세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국·내외 제도들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외에 성실사업자 우대제도와 성실납세 협약제도가 있는데, 두 제도 모두 납세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구별된다.¹²⁾ 먼저 성실사업자 우대제도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와 세무조사의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로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를 도입하고, 복식부기 또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가산세와 세무조사,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과태료, 직무정지 등이 있다.

1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된다.

12) 그 외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기 전 과세정보를 예측해 제공하는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도가 있다. 2016년까지는 탈루 가능성이 큰 납세자에게 사후검증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경고성 안내문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2017년부터는 일반적인 납세 절차 안내문만 보내고 있다.

**일본의 청색신고제도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관련 장부 보존 등의
의무를 부여하나,
해당 증빙의 진실성이나
계산내역의 정확성을
검증하지는 않는다.**

는 간편장부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면서 전체 거래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개인사업자를 성실사업자로 규정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 대신 연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특히,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면서 복식부기를 기록·관리하고, 수입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 성실사업자 우대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구재이, 2015).

성실납세 협약제도(Co-operative Compliance Service)는 국세청과 적절한 세무 통제 절차(Tax Control Framework)를 갖춘 법인이 세무문제를 사전협의·해결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는데, 성실납세협약제도의 신청 대상은 수입금액 3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의 법인이다. 성실납세이행협약이 체결되면, 국세청과 대상 법인은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법인의 세무문제를 협의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기업친화적 세무환경을 조성하고, 성실한 법인에 최적의 납세여건을 만들어, 법인의 납세성실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세무문제의 신속한 해결로 세무상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및 국세 불복비용이 감소하며, 법인의 투명성이 높아져 대외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나. 일본의 청색신고제도¹³⁾

일본의 청색신고제도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관련 장부의 기장, 보존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같이 해당 증빙의 진실성 검증이나 관련 계산내역의 정확성을 검증하지는 않는다. 청색신고제도는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적용되나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법인을 기준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법인이 청색신고 승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한까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13) 정지선·구자은(2014), pp. 273~280을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승인 여부와 그 취지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신청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청색신고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여 거래의 내용을 기록함과 동시에 그 장부를 일정 기간까지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또 소관 세무서장이 장부의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 청색신고제도의 「법인세법」상 혜택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경정통지서의 이유부기의 강제, 추계과세의 금지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각종 할증상각의 허용, 준비금 설정의 허용과 같은 「조세특별조치법」에 규정된 혜택이 있다. 청색신고승인을 받은 법인이 장부서류의 비치, 기록 또는 보존을 하고 있지 아니한 등의 경우에 그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청색신고승인이 취소되면 그 취소의 효과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연도까지 거슬러 올라가 모두 적용된다.

다. 미국의 납세성실도사전확인제도¹⁴⁾

미국의 납세성실도사전확인제도, 호주의 성실납세약정제도, 네덜란드의 수평적 세원관리는 우리나라의 성실납세 협약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로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미국의 납세성실도사전확인제도(Compliance Assurance Process: CAP)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CAP는 국세청과 기업 간의 투명한 협력을 촉진하고 세무행정과 납세순응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납세순응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AP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으로 규정된다.

- 조세행정 향상에 관심을 표명한 업종별 선도 기업
- 세무조사 중인 기업으로서 향후 사업연도에 납세성실도사전확인제도를 적용받기 원하는 기업
- 국세청의 시범실시제도에 기 참여한 기업
- 조세회피 의도가 없고 인지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기업
-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인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은 기업
- 중요한 행정소송이 없는 기업 기준을 충족한 기업

CAP 신청기업은 모든 거래정보 및 세무처리 방침 등을 공개하고 국세청과 중

미국의 납세성실도 사전확인제도는 국내의 성실납세 협약제도와 유사한 성격으로, 국세청과 기업 간 투명한 협력의 촉진과 세무행정과 납세순응에 대한 부담 완화에 목적이 있다.

14) 정지선·구자은(2014), pp. 278 ~279; 박인목·홍정화(2012), pp.208~209를 인용하였고, 미국 국세청의 Internal Revenue Manuals 중 4.51.8 Compliance Assurance Process(CAP) Examinations의 일부를 번역하여 정리하였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그 취지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기여한다면,
납세자는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제도 대상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요 세무문제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하여 일정한 합의를 도출한다. 이때 국세청은 신청납세자의 해당 연도 중요 거래 및 세무처리를 실시간으로 조사한다. 본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조세확실성 확보, 자원절약, 재무보고 정확성 제고라는 편익을, 국세청은 납세순응도 증진, 실시간 세금신고 검증, 새로운 세금쟁점 파악, 자원절약에 따른 조사비용 제고라는 편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해당 제도의 책임 및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 관할 지역 관리자(Territory Manager)는 납세자에게 관련 문제를 30일 이내에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간 안에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현장운영이사(Director, Field Operations: DFO)가 납세자에게 해당 제도의 적용이 종료됨을 고지하며, 이후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의 신고서를 기존의 방법대로 사후 심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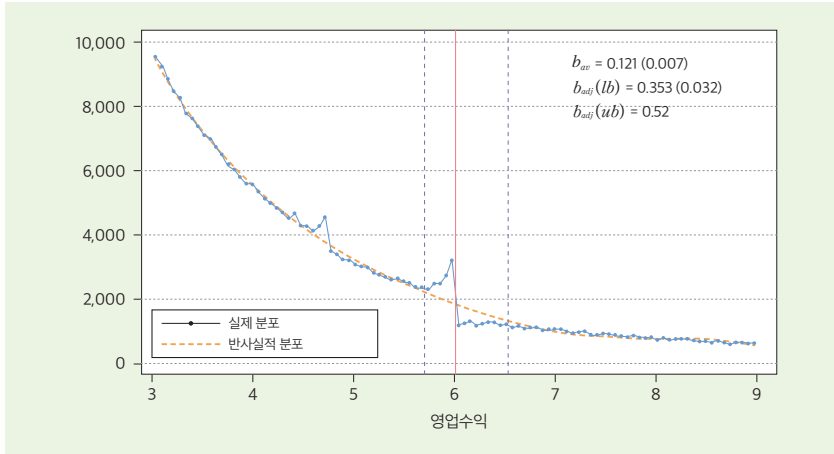
Ⅲ.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조정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규모 개인사업자 및 이들과 유사한 성격의 소규모 법인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신고 내용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사전검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정착시키고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및 제재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지원제도로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세금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등이 있으며, 제재수단으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가산세와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과태료, 직무정지 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세원양성화 및 징수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그 취지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기여한다면, 납세자는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제도 대상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연간 총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사전검증을 피하기 위하여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이하로 내릴 유인이 있다. 물론, 수입금액 조정 시 세무조사에 따른 징계 위험 증가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가 제도에 반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입

[그림 1] 스페인 기업의 영업수입 분포

(단위: x축 - 백만유로, y축 - 기업 수)



출처: Almunia and Lopez-Rodriguez(2018), p. 18, Figure 2

[그림 1]을 보면 스페인 기업들이 LTU의 조세 모니터링 강화를 회피하고자 영업수입을 조정하는 행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금액 조정 비용 및 수입금액과 기준금액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이 성실 신고확인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수입금액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분포가 제도 대상 기준금액 좌측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조정비용(adjustment cost), 부주의(inattention) 등의 최적화 마찰(optimization frictions)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입금액 분포는 기준금액 좌측으로 다소 퍼져 있고 경계 우측에도 어느 정도의 빈도가 존재할 수 있다.

스페인에서는 연간 영업수입이 600만유로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 납세자당 조사관 수가 증가하는 등 세무조사 집행 강도(enforcement intensity)에 단절점이 존재하는데, Almunia and Lopez-Rodriguez(2018)는 스페인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기업들이 엄격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영업수입을 경계 아래로 낮춘다는 것을 분석한 바 있다. 스페인 세무당국은 1995년 Large Taxpayers Unit(LTU)를 설립하여 대규모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LTU는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세금신고서상 불일치 및 오류사항 등을 검수한다. 제3자(거래 상대방 또는 은행)가 보고한 재무제표 및 거래내역 등을 이용하여 불일치 항목이 발견되면 해당 기업에 추가적인 소명 또는 세금납부를 요청하며, 불일치 항목이 큰 경우에는 세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1]을 보면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수입금액 기준 좌측에 기업의 분포가 몰려 있고 단절점 우측에는 분포의 공백(hole)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은
기본적으로 업종에 따라
다른데, 몇 차례의 제도
개정으로 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표 4>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변천

업종	연간 수입금액(매출)		
	2011~2013 ¹⁾ 귀속연도	2014~2017 ²⁾ 귀속연도	2018~2019 ³⁾ 귀속연도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0억원	20억원	15억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 상품중개 등	15억원	10억원	7.5억원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예술스포츠,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7.5억원	5억원	5억원

출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2011. 6. 3.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2013. 6. 11.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2018. 2. 13. 개정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스페인 기업들이 LTU의 조세 모니터링 강화를 회피하고자 영업수입을 조정하는 행태가 나타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수입금액을 조정하는지를 분석한다.¹⁵⁾ 구체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 좌측에 집군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기간에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이를 활용하여 집군의 위치가 기준금액 변화에 상응하여 이동하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분석자료는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2015~2018년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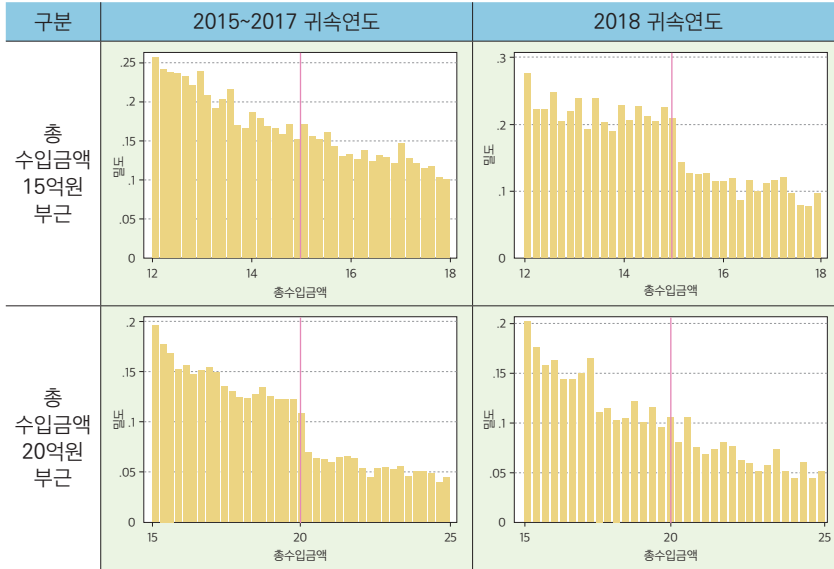
먼저 종합소득세 자료를 수입금액 기준이 다른 업종 및 귀속연도에 따라 구분하여 각 기준점 부근의 총수입금액 분포를 살펴보았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은 기본적으로 업종에 따라 다른데, 몇 차례의 제도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이 제도 도입 당시에는 30억원이었는데, 2014년과 2018년에 각각 20억원, 15억원으로 인하되었다.

[그림 2]에서는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업종의 개인사업자 총수입금액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2015~2017 귀속연도 표본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인 총수입금액 20억원 좌측에 분포가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에는 해당 업종의 기준 수입금액이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집군이 나타나는 위치도 이에 맞춰서 이동한다.

15) 법인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아서 동일한 분석을 적용할 수 없다.

[그림 2]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2015~2018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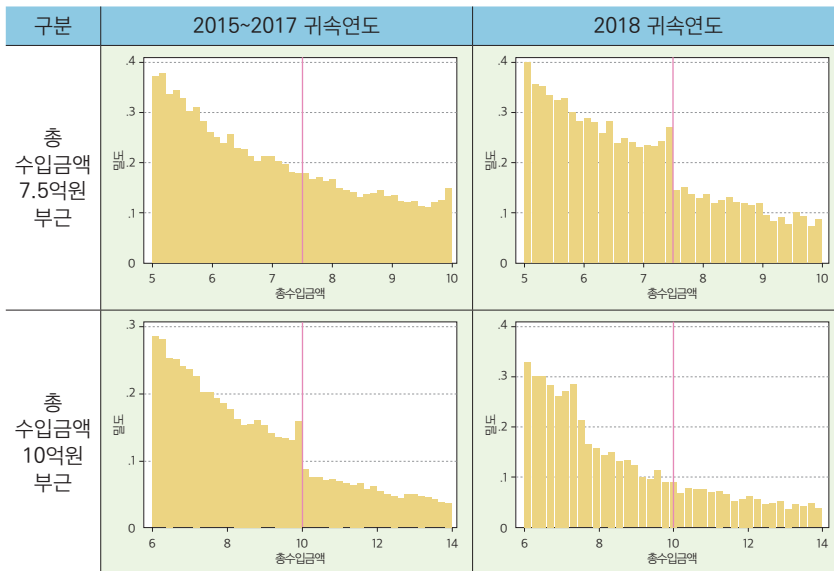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와 [그림 3]을 보면, 해당 업종 모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인 총수입금액 좌측으로 분포가 쏠려 있으며, 2018년에 해당 업종의 기준 수입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집군이 나타나는 위치도 이에 맞춰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 상품증개 등”의 2015~2018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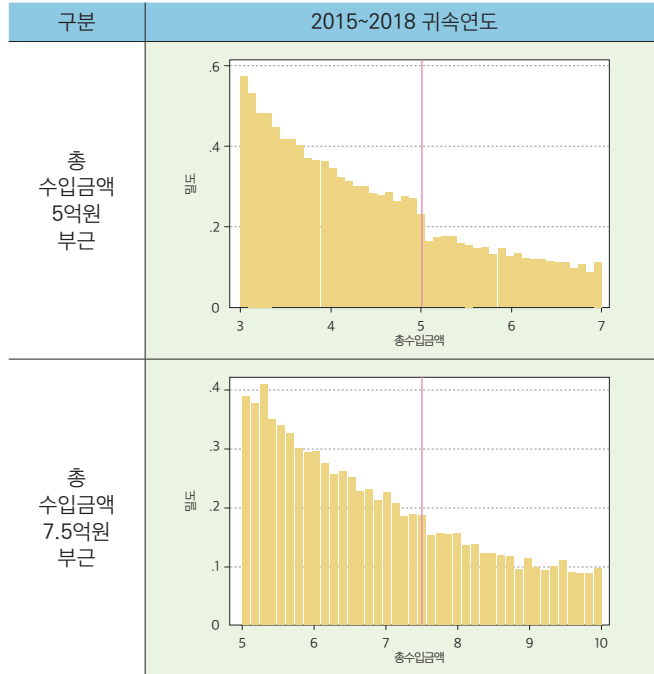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는 표본을 업종 및 귀속연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표본을 이용한 분석으로,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준 수입금액 좌측에 분포가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예술프로젝트, 기타개인서비스업 등”의 2015~2018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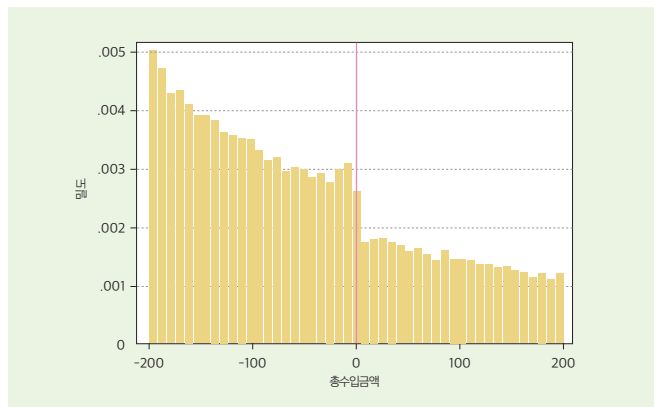
(단위: 억원)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기준점 대비 총수입금액 분포

(단위: 억원)



출처: 저자 작성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 상품중개 등” 업종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2015~2017 귀속연도 표본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인 총수입금액 10억원 좌측에 분포가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8년에는 해당 업종의 기준 수입금액이 7.5억원으로 인하되었는데, 집군도 해당 경계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예술스포츠,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업종의 경우 분석기간에 기준 수입금액 변화가 없었다. 전체 기간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준금액인 5억원 부근에 집군이 나타났다. 2011~2014 귀속연도 수입금액 기준이었던 7.5억원 부근에는 집군이 관측되지 않는다.

[그림 5]에는 표본을 업종 및 귀속연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표본을 이용하였을 경우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각 관측치의 해당 경계점을 0으로 표준화하여 경계점 대비 총수입금액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히스토그램에서 x축의 단위는 100만원으로 경계점 ±2억원 부근의 분포를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결과와 일관되게 기준 수입금액 좌측에 분포가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집군추정법(bunching estimation)을 이용하여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응하는 정도를 정량화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집군추정법은 단절점이 없을 경우의 반사실적분포(counterfactual distribution)를 추정하여 실제 분포와의 차이를 집군의 정도로 정의한다. 집군의 크기가 크게 나타날수록 경제주체가 관련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집군분석은 크게 kink 혹은 notch를 이용하는 두 가지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Kleven, 2016). kink와 notch는 각각 제도로 인해 나타난 경제주체 선택집합(choice sets)의 기울기(slope)와 수준(level) 변화를 의미하는데,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notch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집군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추정될 수 있다(Chetty et al., 2011). 먼저 모든 관측치에 대해 경계점 대비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경계점 부근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속하는 관측치의 수(frequency)를 측정하여 구간 단위의 자료를 구축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을 추정할 수 있다.

$$C_j = \sum_{i=0}^b \beta_i (Z_j)^i + \sum_{i=-lb}^{ub} \gamma_i \cdot 1[Z_j = i] + v_j \quad \text{식 (1)}$$

**지금부터는
집군추정법을 이용하여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응하는 정도를
정량화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집군의 크기가
크게 나타날수록
경제주체가 관련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6]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총수입금액 기준
부근에 상당한 규모의
집군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C_j 와 Z_j 는 각각 특정 구간 j 에 속하는 관측치의 수와 경계점 대비 수입 금액의 중간값이다. p 는 다항식의 차수를 의미하며, $[lb, ub]$ 은 집군이 나타나는 영역(the lower and upper bound of the excluded interval)이다. 경계점 주변의 반사실적 분포 \widehat{C}_j 는 식 (1)을 통해 구한 예측값(predicted value)에서 $[lb, ub]$ 에 속하는 더미변수들이 기여하는 바를 제외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¹⁶⁾

$$\widehat{C}_j = \sum_{i=0}^p \widehat{\beta}_i (Z_j)^i \quad \text{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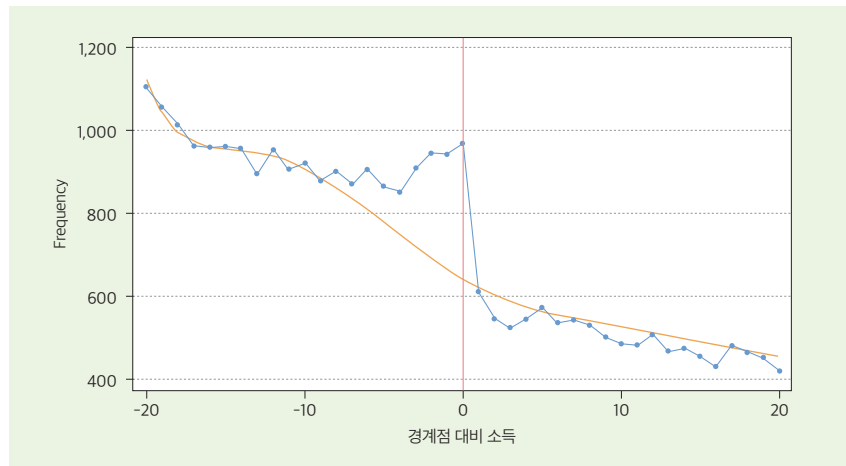
이때 집군의 정도 \widehat{b} 는 아래와 같이 추정될 수 있다. \widehat{b} 는 경계점 주변에 과세소득 분포가 얼마나 몰리는지를 반사실적 분포의 평균 빈도수에 대비하여 나타낸다.

$$\widehat{b} = \frac{\sum_{j=lb}^{ub} (C_j - \widehat{C}_j)}{\sum_{j=lb}^{ub} \widehat{C}_j / (ub - lb + 1)} \quad \text{식 (3)}$$

분석결과, 성실신고확인제도 연간 수입금액 기준 부근에 나타난 집군의 크기는 1.93이며, 이는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집군의 크기가 1.93이라는 것은 측정된

[그림 6]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조정에 대한 집군분석 결과

(단위: 개, 구간 수)



출처: 저자 작성

16) Chetty et al.(2011)을 따라 반사실적 분포 아래의 면적과 실제 분포 아래의 면적이 같도록 반사실적 분포의 위치를 조정한다.

집군의 크기가 같은 구간에 속하는 반사실적 분포의 평균 높이의 193%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6]에서 파란 점들은 각 구간에 속하는 실제 관측치 수를 의미하고,¹⁷⁾ 빨간 실선은 다항식의 차수인 p 를 7로 설정하여 추정한 반사실적 분포이다. 경계점 부근을 제외하고 실제 분포와 추정된 분포가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분포가 성실신고확인제도 기준금액 좌측에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2018년 업종별 기준금액이 변화하면서 집군도 그에 맞춰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측된 집군이 납세자들의 행태 반응에 기인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첫째, 현금영수증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둘째,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은 동 제도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마치는 글

본고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국내외 성실신고유인 제도를 살펴보고,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대규모 개인사업자 및 이들과 유사한 성격의 소규모 법인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신고 내용에 대하여 사전검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성실신고의 이행을 유도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간 총수입금액을 제도 대상 기준금액 이하로 내릴 유인이 있다. 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넘어서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대응은 수입금액 조정 시 발생하는 비용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종합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수입금액을 조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분포가 업종별 기준금액 좌측에 몰리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은 동 제도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 각 구간의 크기는 500만원으로 설정한다.

향후 과세강화에 따른 행태반응의 경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해 왔는데, 이로 인한 효율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탈세 및 조세회피 등의 행태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Saez et al.,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소득층이 세율인상에 대하여 노동공급 조절 등 실제적인 경제행위 변화로 대응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그들의 과세소득 탄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조세회피 및 탈세 수단에 대한 접근도가 높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 과세강화에 따른 행태반응의 경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 세원 이동성,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빅데이터(big data)를 이용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연구는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KIP](#)

<참고문헌>

구재이,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제연구』, 48, 2015, pp. 91~141.

권성오·권성준, 『소득세의 효율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안종석·강성훈·오종현, 『소득세 Tax Gap 추정과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Almunia, Miguel, and David Lopez-Rodriguez, “Under the radar: The effects of monitoring firms on tax compliance,”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0(1), 2018, pp. 1~38.

Chetty, R., Friedman, J. N., Olsen, T., and Pistaferri, L., “Adjustment Costs, Firm Responses, and Micro vs. Macro Labor Supply Elasticities: Evidence from Danish Tax Record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6(2), 2011, pp. 749~804.

Kleven, Henrik Jacobsen, “Bunching,” *Annual Review of Economics*, 8, 2016, pp. 435~464.

Saez, E., Slemrod, J., and Giertz, S. H., “The Elasticity of Taxable Income with respect to Marginal Tax Rate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0(1), 2012, pp. 3~50.





국제비교 |



■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 본 자료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한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를 비교분석하여 정리한 것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국가별 총부채 변화추이

[총부채의 국제비교]

- 2020년 2분기 한국의 총부채는 GDP 대비 252.1%로 선진국¹⁾(300.8%)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신흥국²⁾(209.5%)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
 - 한국의 가계부채(98.6%)와 기업부채(108.3%)는 선진국(가계 75.3%, 기업 98.8%) 및 신흥국(가계 45.2%, 기업 108.8%)과 비교할 때 높은 반면, 정부부채(45.2%)는 선진국(126.7%) 및 신흥국(55.5%) 대비 낮은 수준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정

부부채와 기업부채는 낮은 증가폭을 보임

- 반면에 선진국은 가계부채가 소폭 감소한 반면 정부부채가 총부채 증가를 주도하였고, 신흥국은 기업부채가 총부채 증가를 주도함

[가계부채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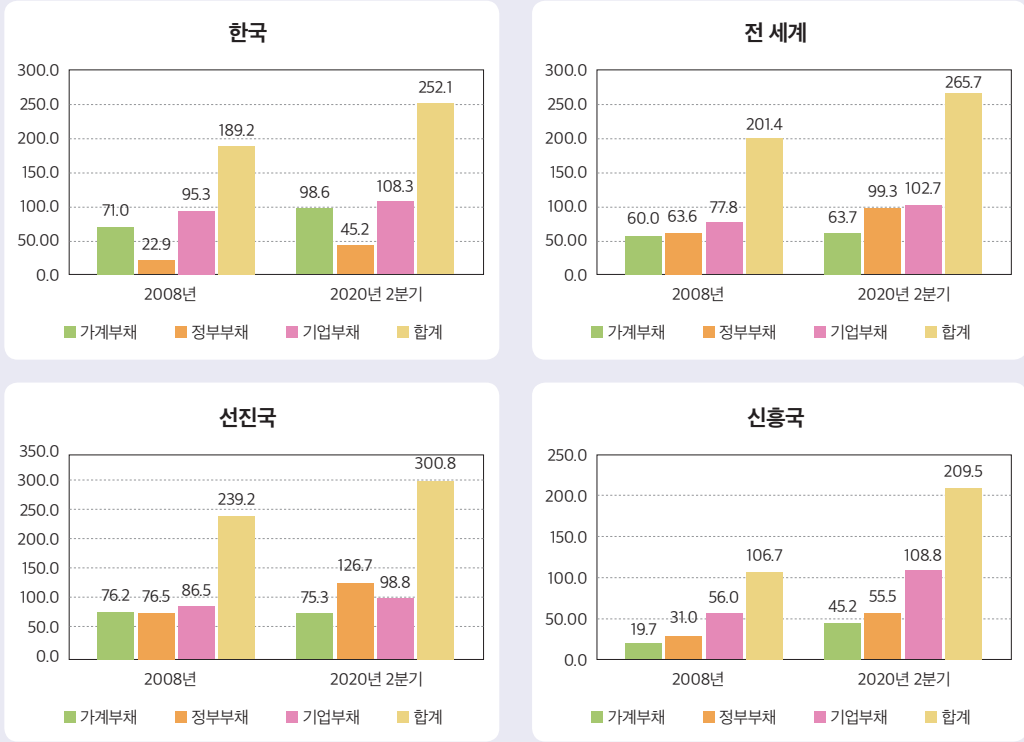
- 우리나라 총부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부채를 항목별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가계부채 추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008년 71.0%에서 2020년 2분기 98.6%로 증가한 반면, 선진국은 2008년 76.2%에서 2020년 2분기 75.3%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비춰볼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조절이 필요함

1) 호주, 캐나다, 덴마크, 유로지역,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2)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체코, 홍콩,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폴란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그림 1] 총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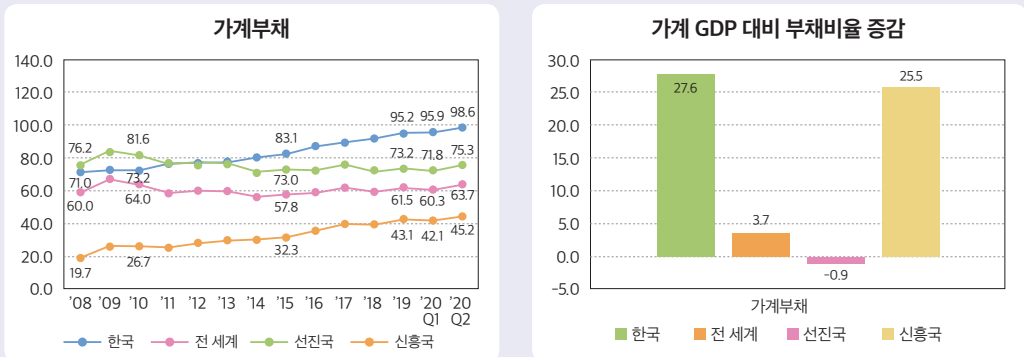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출처: BIS(국제결제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그림 2] 가계부채 증감추이

(단위: GDP 대비 %, %p)



출처: BIS(국제결제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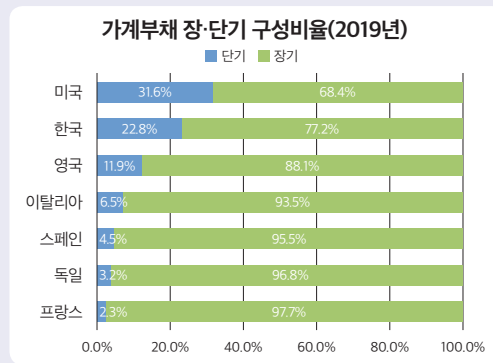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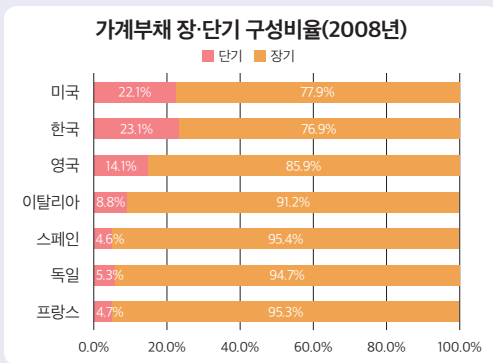


- 둘째,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단기(1년) 비중이 2019년 22.8%로 집계되어, 해외 주요국(프랑스 2.3%, 독일 3.2%, 스페인 4.5%, 이탈리아 6.5%, 영국 11.9% 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동성 위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그림 3] 참조)

- 셋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9년 47.2%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아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그림 4] 참조)

[그림 3] 가계부채 장·단기 구성비율(2008년,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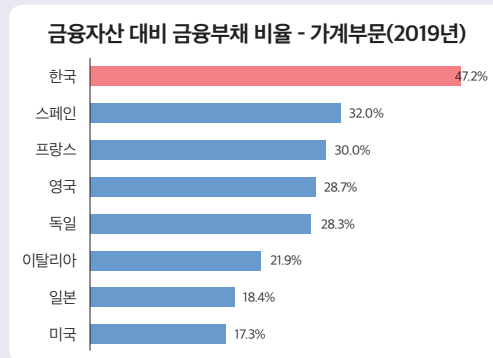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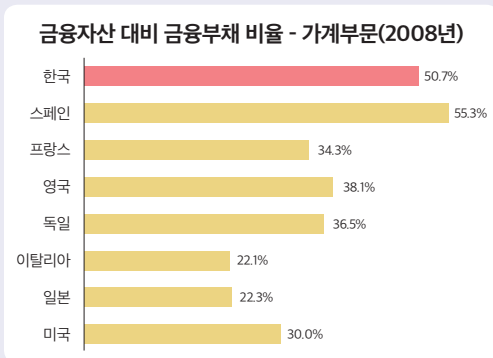
(단위: %)



출처: OECD Stat, Households'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그림 4] 가계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2008년, 2019년)

(단위: %)



출처: OECD Stat, Financial balance sheets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기업부채의 국제비교]

■ 우리나라의 기업부채를 해외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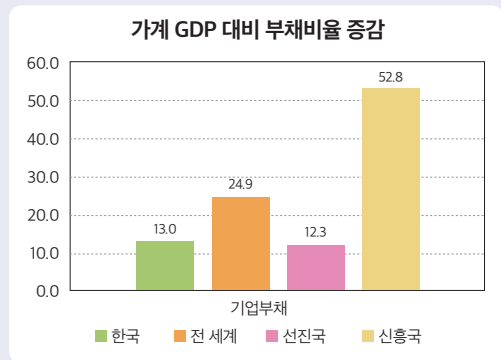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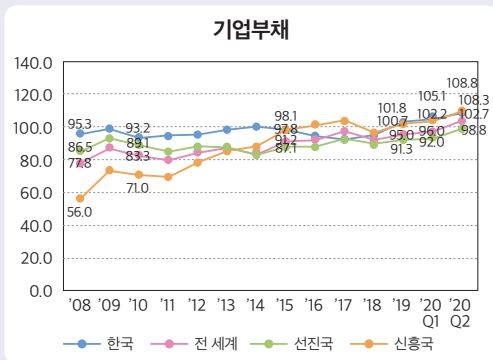
- 첫째, 기업부채 추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008년 95.3%에서 2020년 2분기 108.3%로 소폭 증가한 편이지만 부채수준은 높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증가속도가 유사한 반면, 신흥국은 2008년 56.0%에서 2020년 2분기 108.8%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둘째,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단기(1년) 비중이 2019년 21.1%로 집계되어, 해외 주요국(영국 37.3%, 독일 36.3%, 프랑스 29.7%, 미국 29.6%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동성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기업부채 증감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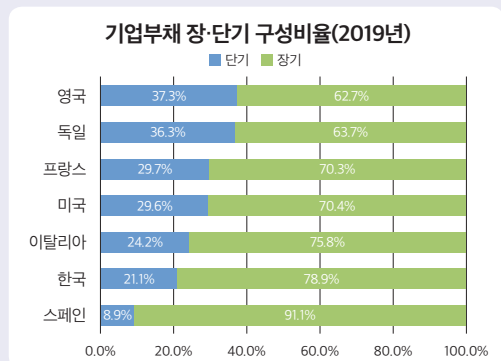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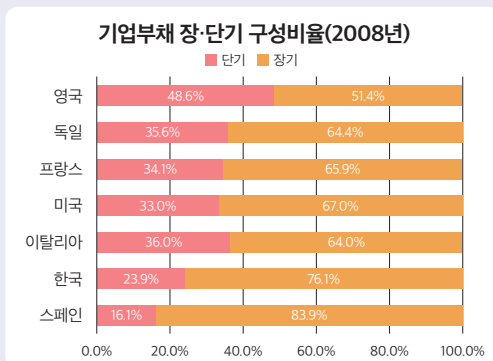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p)



출처: BIS(국제결제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그림 6] 기업부채 장·단기 구성비율(2008년, 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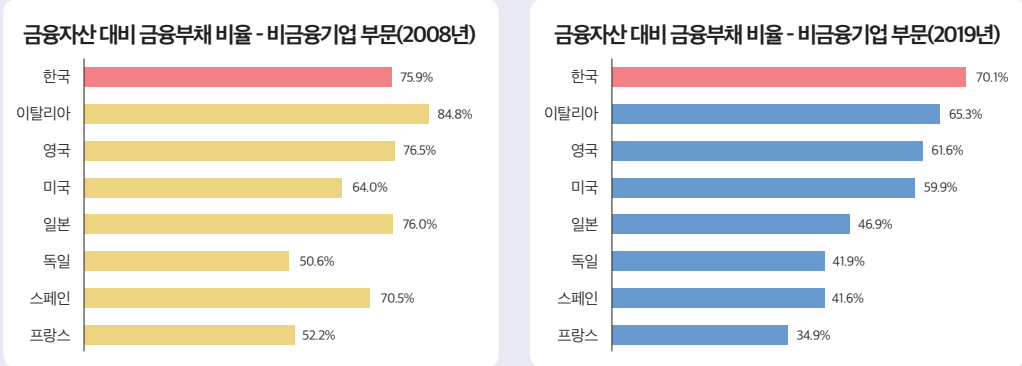


출처: OECD Stat, Financial balance sheets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그림 7] 기업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³⁾ 비율(2008년, 2019년)

(단위: %)



출처: OECD Stat, Financial balance sheets; BIS(국제결제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 셋째, 우리나라 기업부문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9년 70.1%로 해외 주요국(프랑스 34.9%, 스페인 41.6% 독일 41.9%) 대비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평가할 수 있음([그림 7] 참조)

[정부부채의 국제비교]

- 한국의 정부부채는 2020년 2분기 GDP 대비 45.2%로 집계되어 전 세계(99.3%), 선진국(126.7%), 신흥국(55.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

3) 금융부채의 경우 보고서 내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BIS(국제결제은행), non-financial corporations (Core debt) 자료를 사용함

- 한국의 정부부채는 2008년 22.9%에서 2020년 2분기 45.2%로 22.3%p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및 복지수요 증대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와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때문임
- 정부부채는 전 세계, 선진국, 신흥국, 한국 모두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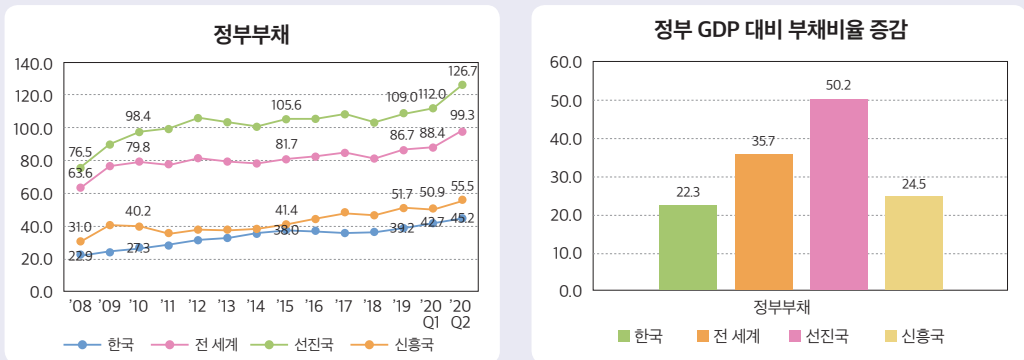
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부부채 증가폭은 신흥국 대비 선진국이 크게 나타났으며, 한국은 정부부채 증가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정부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8] 정부부채 증감추이

(단위: GDP 대비 %, %p)



출처: BIS(국제결제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중점 분석사항

[주택담보대출 국제비교 및 분석]

-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9년 GDP 대비 43.9%(한국1)로 해외 주요국(미국 49.5%, 프랑스 45.4%, 스페인 41.6%)과 비슷한 수준임
-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해외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대출 관련 위험이 다른 국가 대비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다만, 최근 증감추이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는 조사된 국가 중 높은 수준의 증가를 보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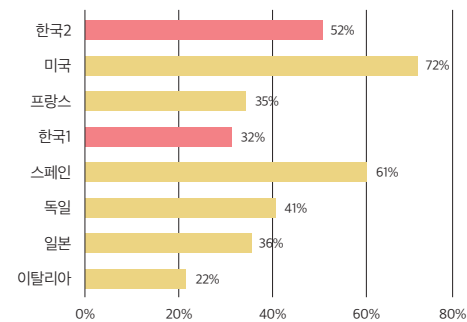
있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속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와는 달리 주택임대와 관련한 전세금 제도가 운영되고, 그 규모가 매우 큰 편임에 따라 이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전세금 규모를 합산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재계산한 결과는 61.2%(한국2)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 다만, 현행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금융환경에서 운영된 제도로서 최근에 관련 위험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규모 또한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그림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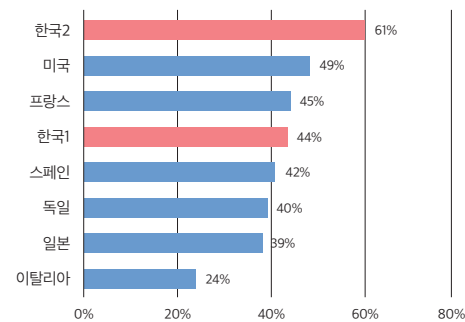
[그림 9] 국가별 주택담보대출 규모 비교

(단위: GDP 대비 %)

주요 국가별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 비교(2008년)



주요 국가별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 비교(2019년)



주: 한국1은 주택담보대출을 GDP로 나눈 금액이며, 한국2는 (주택담보대출+전세금-전세자금대출)을 GDP로 나눈 금액임. 참고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는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됨

출처: OECD Stat, Households'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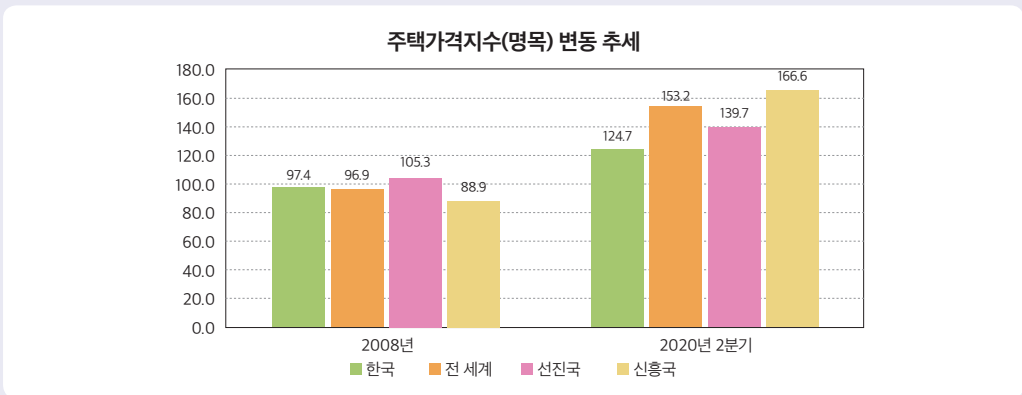
-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과 밀접한 연계성이 있고,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주택가격의 하락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증가가 동반 발생한 사례를 비춰볼 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주택담보대출과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 주택가격지수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20년 2분기 124.7로 전 세계 153.2, 선진국 139.7, 신흥국 166.6에 비해 최근 10년간 주택가격 상승폭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
 - 즉, 주택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국가별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등에 따른 높아진 유동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주택가격 상승이 선진국 및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등 관련 금융위험이 다른 국가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할 수 없음
-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국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과는 거리가 있는데, 이는 BIS 주택가격지

[그림 10] 주택가격지수의 국제비교

(단위: %)



자료: BIS(국제결제은행); Nominal residential property prices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4) BIS(국제결제은행)의 명목주택가격지수(Nominal residential property prices)는 2010년을 기준(100)으로 국가별 주택가격을 지수로 표시한 지표임. 기존 연구보고서 및 언론보도 등에서는 명목주택가격지수 외에도 실물주택가격지수(Real residential property prices)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명목주택가격지수 기준으로 분석함. 참고로 OECD에서는 Nominal house price index(2015=100)를 공시하고 있으며, 국가별 비교 분석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어 BIS 자료를 활용함



수의 경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유형의 주택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지수 변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대출,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주식투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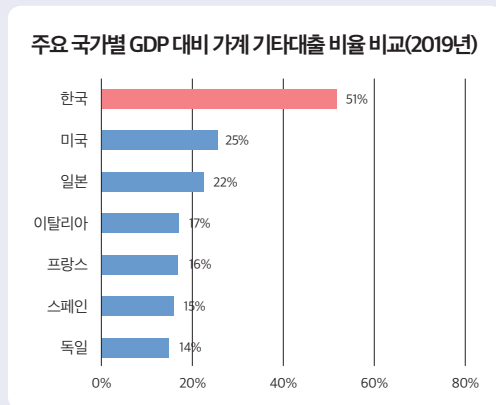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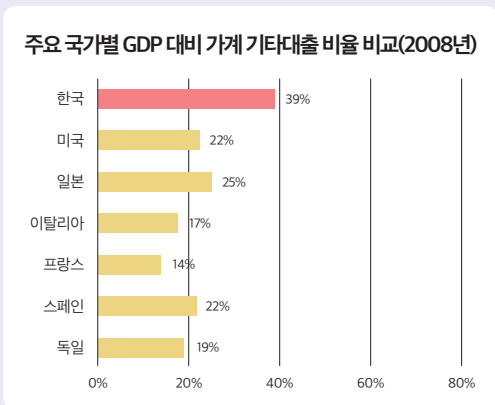
[기타(신용)대출 국제비교 및 분석]

- 우리나라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신용)대출 규모는 2019년 GDP 대비 51.3%로 해외 주요국(독일 14.3%, 스페인 15.3%, 프랑스 16.3%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증가폭(12.3%p)이 가장 높은 반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의 경우 오히려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대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문의 기타대출 중 일부 자금이 주택 구매 및 전세자금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분석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자료의 부재로 추가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 최근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의 관리 필요성에 따라 대출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조절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소상공인 운영자금 마련 등 가계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계부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11] 국가별 가계부채 기타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 비교

(단위: GDP 대비 %)



출처: OECD Stat, Households'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부채와 이자비용 국제비교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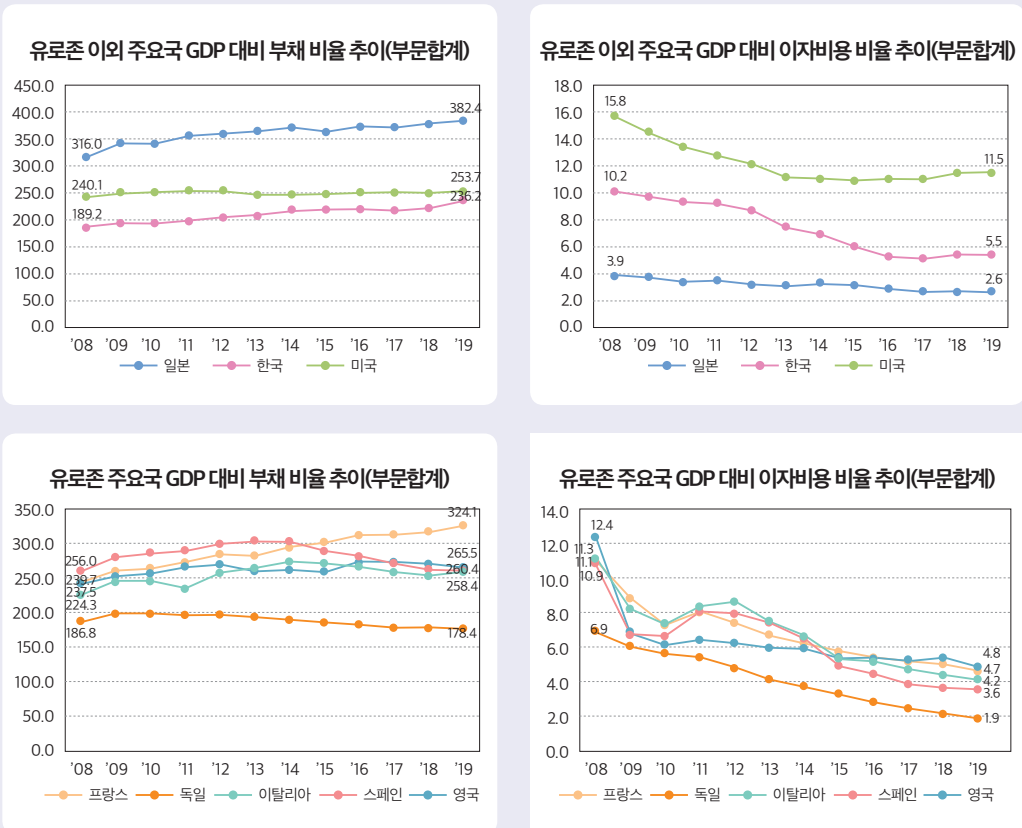
- 부채부담에 따른 경제부문별 이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가계, 기업, 정부 부문을 통합한 총부채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대부분이 증가한 반면, 이자비용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즉, 국가별 부채규모는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부채 사용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비용 관점에서 비춰볼 때 부채부담은 오히려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총부채가 2008년 189.2%에서 2019년 236.2%로 47.0%p 증가했지만, 총이자비용은 오히려 2008년 10.2%에서 2019년 5.5%로 4.7%p 감소함

[그림 12] 주요국 총부채 규모 및 이자비용 추이

(단위: GDP 대비 %)



출처: OECD Stat; BIS(국제결제은행)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경제부문별 이자비용 간 대체성]

- 가계, 정부, 기업 부문 각각의 이자비용 비중 추세를 주요 국가별로 검토한 결과 미국 및 유럽국가 중 일부 국가에서는 가계부문과 정부부문에 이자비용 간 대체성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및 유럽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가계부문 이자비용은 크게 감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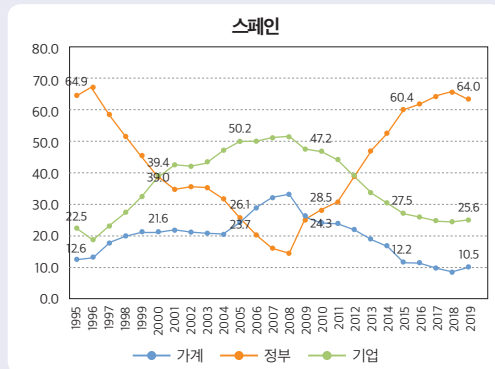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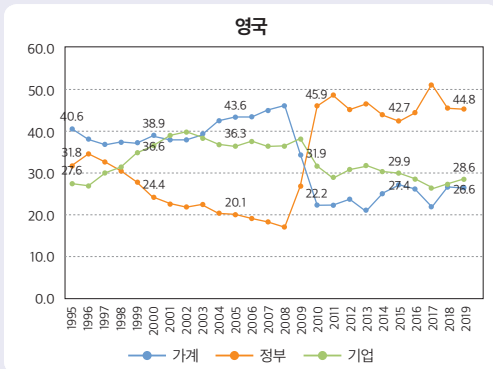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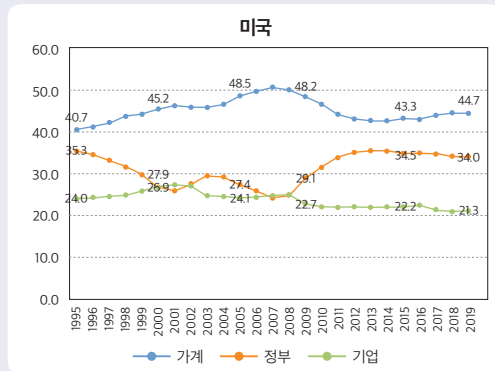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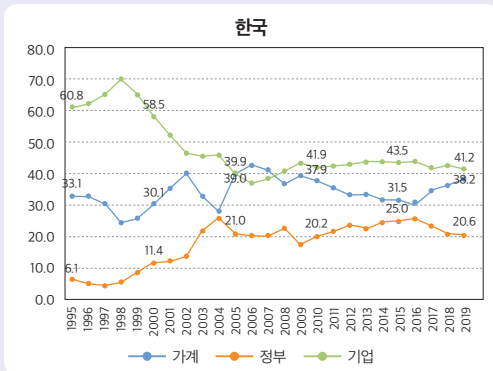
반면, 정부부문의 이자비용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미국, 영국, 스페인 등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가운데 적극적인 확장재정 운영에 따라 정부부문의 부채가 급증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가계부문과 정부부문의 이자비용이 일정 부분 대체성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한국의 경우 IMF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

[그림 13] 주요국 이자비용 부문별 비중 추세

(단위: %)



출처: OECD Stat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의 이자비용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정부부
문 이자비용이 증가하였고, 가계부문의 경우 일
부 추세 변동은 있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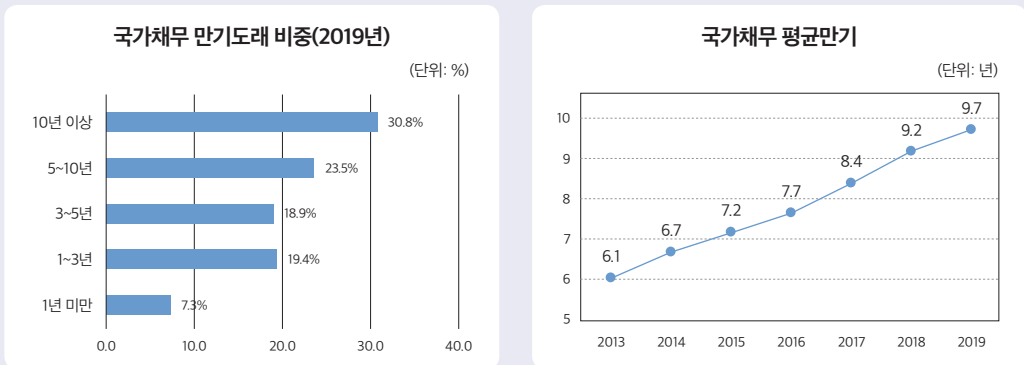
[이자율 상승에 따른 영향 분석]

-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난 현 시점에서 금리가 급
격하게 인상되는 경우 부채 부담에 따른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 전체에 충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다만, 이자율 상승에 따른 영향은 고정·변동이
자율 여부 및 부채의 만기 구조 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

- 정부부채는 대부분 고정이자율로 발행되고, 최
근 장기물(10년, 20년, 30년) 발행이 크게 늘어
평균만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음
- 국가채무의 만기(장기↑)와 이자율 유형(고정)
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 즉, 국가채무 평균만기⁵⁾가 9.7년(2019년)임
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 충격이 연도별로 분
산되어 현 시점에서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
나지 않을 수 있음([그림 14] 참조)

[그림 14] 국가채무 만기분석



출처: 기획재정부, 「2020~2024 국가채무관리계획」, 2020을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구성

5) 기획재정부, 「2020~2024 국가채무관리계획」, 2020.



- 반면에 가계 및 기업의 경우 변동이자율 비중이 고정이자율 대비 높은 편임에 따라 금리인상의 충격이 정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
- 가계 및 기업의 경우 2020년 변동이자율 비중이 각각 69.4%, 64.5%로, 2011년 변동이자율 비중 90.7%, 72.3%에 비해 21.3%p, 7.8%p 감소하였으나, 변동이자율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임

요약 및 시사점

- 총부채 변화를 종합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20년 2분기 한국의 총부채 증가(62.9%p)는 선진국(61.6%p) 및 신흥국(102.8%p) 대비 높은 편은 아니지만, 가계부채의 경우 증가속도(27.6%p) 및 규모(98.6%)가 커서 이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함
-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타대출의 비중 및 규모가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주의가 필요함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우리나라 주택가격지수 상승폭(한국 124.7, 전 세계 153.2, 선진국 139.7, 신흥국 166.6)이 해외 국가 대비 낮은 편으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서울 등 일부 특정 지역의 경우 급격한 상승을 기록하

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기타대출의 경우 규모가 2019년 GDP 대비 51.3%로 해외 주요국(독일 14.3%, 스페인 15.3%, 프랑스 16.3% 등) 대비 매우 큰 편이고, 증가폭 또한 커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대출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통한 증가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교육비, 생활비, 운영자금 등)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대응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부문별 실질적인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이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가계, 기업, 정부부문을 통합한 총부채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대부분이 증가한 반면, 이자비용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즉, 비용 관점에서 부채부담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총이자비용이 2008년 GDP 대비 10.2%에서 2019년 5.5%로 4.7%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규모 추세에서는 경제부문 간 대체성을 찾기 어려웠으나, 이자비용 비중으로 추세를 분석한 결과 미국 및 유럽 국가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문과 정부부문 간의 대체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음

- 마지막으로 저금리 상황 속에서 크게 증가한 부채는 추후 금리인상 등에 따라 부채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정부부채의 경우 고정금리가 대부분이고, 평균만기가 9.7년(2019년 국가채무 기준)으로 금리인상 충격이 연도별로 분산되어 이자비용 증가폭이 적을 수 있음

- 반면에,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의 경우 변동이자율 비중이 고정이자율 대비 높은 편(2019년 가계 69.4%, 기업 64.5%)임에 따라 금리인상의 충격이 정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자료 정리 및 작성: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윤진 재정통계팀장, 이기돈 회계사>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직원 유지 크레딧 및 깃 경제 소득 세무처리 지침 발표]

■ 미국 국세청은 2021년 1월 26일과 2월 18일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원 유지 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 ERC) 및 깃 경제(Gig Economy) 소득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함

■ 직원 유지 크레딧은 코로나19 관련 고용주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난해 말 발효된 추가 경기부양법(CARES Act)에 중요한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지원 기간 및 혜택이 확대됨¹⁾

● 직원 유지 크레딧의 지원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됨

● 직원 유지 크레딧 적용 대상 및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됨

-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감소율을 기존 50%에서 20%로 완화함

- 직원당 공제 가능한 적격 임금의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인상함

- 직원당 공제 가능한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1만 달러²⁾에서 분기별 1만달러로 인상함

- 따라서 당해 연도에 공제 가능한 최대 ERC 금액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총 1만 4천달러임^{3),4)}

■ 깃 경제 소득에 관한 세무 처리 규정을 발표함⁵⁾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과세체계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깃 경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소득세·사회보장세·추가 메디케어세를 납부해야 함

- 근로계약이 체결된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에서 별도로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임시직(Gig Worker)의 경우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함⁶⁾

-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됨

1) News IBFD, "COVID-19 Pandemic: IRS Provides Guidance on Newly-Extended Employee Retention Credit," 2021. 1.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1-27_us_1.html, 검색일자: 2021. 2. 15.

2) 2021년 2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110만원임

3) 2021년 2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550만원임

4) IRS, <https://www.irs.gov/newsroom/new-law-extends-covid-tax-credit-for-employers-who-keep-workers-on-payroll>, 검색일자: 2021. 2. 25.

5) News IBFD, "IRS Reminds Taxpayers to Report Gig Economy Income on Tax Returns," 2021. 2.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2-19_us_2.html, 검색일자: 2021. 2. 22.

6) IR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manage-taxes-for-your-gig-work>, 검색일자: 2021. 3. 5.

- 독립계약자의 경우, 홈오피스 공제(Home Office Deduction)를 통해 사업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 현재 그리스의 경우 농업활동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1만 2천유로⁹⁾를 초과하면 특별 연대부금이 부과됨¹⁰⁾

[그리스 - 코로나19 관련 조세정책 발표]

- 그리스 정부는 2021년 2월 5일과 2월 16일에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거주자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및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 조세 조치를 발표함
- 외국인 거주자의 2019년 귀속 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농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정 소득에 대해 특별 연대부금 부과를 면제함^{7), 8)}
 - 당초 2020년 12월 31일까지였던 외국인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기한을 2021년 2월 26일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추가적으로 6월 30일까지로 재연장함
 - 2020년에 농민에게 지급된 보조금 및 지원금에 대해서는 특별 연대부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함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 커피 및 무알콜 음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발표함¹¹⁾

- 커피 및 무알콜 음료, 교통, 영화관 및 연극 공연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함¹²⁾
- 관광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티켓가격 안정화 및 구매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동물원 티켓의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24%에서 13%로 인하함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벨기에 - 국외 소재 부동산 소득에 대한 평가 기준 초안 발표]

- 벨기에 정부는 2021년 1월 27일 국외 소재 부동산 소

7) News IBFD, "Greece Plans to Extend Filing Deadlines for 2019 Income Tax Returns of Foreign Residents," 2021. 1.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1-28_gr_2#tns_2021-01-28_gr_2, 검색일자: 2021. 2. 15.

8) News IBFD, "Greece Extends 2019 Income Tax Returns Filing Deadlines for Foreign Residents," 2021. 2.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2-10_gr_1, 검색일자: 2021. 2. 25.

9) 2021년 3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615만원임

10) OECD iLibrary, <https://www.oecd-ilibrary.org/sites/25d3a2fd-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25d3a2fd-en>, 검색일자: 2021. 3. 5.

11) News IBFD, "COVID-19 Pandemic: Greece Extends Reduced VAT Rates for Coffee and Non-Alcoholic Beverages and Announces Sixth and Seventh Rounds of Repayable State Cash Advance Scheme," 2021. 2.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2-16_gr_2.html, 검색일자: 2021. 2. 21.

12) News IBFD, "COVID-19 Pandemic: Greece Extends the VAT Reduced Rate for Transport, Coffee, Non-Alcoholic Beverages and Cinema Tickets," 2020. 10. 21.,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0-10-21_gr_2.html#tns_2020-10-21_gr_2, 검색일자: 2021. 2. 25.



득의 과세가격 결정 기준에 대하여 국내 소재 부동산 소득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함^{13), 14)}

● 2020년 11월 12일 Comm. v. Belgium (Case C-110/17)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EU 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위하여 국내 및 국외 소재 부동산 소득에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 규칙 마련이 필요해짐

● 국외 소재 부동산의 가치평가 기준을 국내 소재 부동산의 가치평가 기준과 동일하게 시장 가치가 아닌 지적 가치(cadastral value)로 평가할 것을 제안함

- 시장 가치에 따른 경우 실질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지적 가치를 따른 경우 바닥 면적 및 예상 임대료와 같은 여러 요인을 기반으로 세금이 부과됨¹⁵⁾

● 다만, 일부 지적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하여 헥타르(hectare)당 2유로¹⁶⁾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예정임

■ 국외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자는 4개월 이내에 세무 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

● 신고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에게 최소 250유로¹⁷⁾에서 최대 3천유로¹⁸⁾의 과태료가 부과됨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독일 -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법상 즉시상각 허용]

■ 독일 재무부장은 2021년 1월 21일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법상 즉시상각을 허용할 예정임을 발표함¹⁹⁾

● 민간 차원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컴퓨터와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의 감가상각에 대해 내용연수 기간을 통한 상각이 아닌 구입 시 즉시상각을 허용함

- 컴퓨터 하드웨어와 표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존에는 3년간의 내용연수를 통해 정액법(straight-line)으로 상각했음(표준화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사례에 따라 판단함)

■ 본 감가상각 관련 세법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 구매분부터 소급적용 가능

13) News IBFD, "Belgium Proposes Alignment of Income Rules for Rented and Unrented Buildings," 2021. 2.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2-12-be_1.html, 검색일자: 2021. 2. 15.

14) KPMG, Belgium - Income Tax,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belgium-income-tax.html>, 검색일자: 2021. 2. 15.

15) The Brussels Times, <https://www.brusselstimes.com/news/business/140418/belgium-fined-e2-million-over-taxation-of-rental-income/>, 검색일자: 2021. 2. 25.

16) 2021. 2. 25. 기준 원화 환산 시 2,700원임

17) 2021. 2. 25. 기준 원화 환산 시 33만원임

18) 2021. 2. 25. 기준 원화 환산 시 405만원임

19) Tax notes international volume 101 Number 4, Germany Allows Immediate Write-Off Of Computers and Software

- 해당 시행안은 2021년 1월 21일 발표되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구매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상각에도 허용되어 시행안 발표일 전까지의 구매분에도 소급 적용됨
 - 해당 가이드라인은 EU의 2016-조세 회피 방지 명령(EU's 2016 anti-tax-avoidance directive)을 준수함
- 발생한 비용이 포함됨
- 적용되는 이자비용은 금융상품과 파생상품 등에 관련된 이자비용 또한 포함됨
 - 세법상 한도가 적용되는 이자비용에는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함
 - 금융상품의 발행 및 상환 프리미엄
 - 선물, 옵션 및 스왑 계약을 포함한 파생상품의 차입 비용
 - 관련 자산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본화된 이자 또는 자본화된 이자의 상각
- 차감에 사용되지 않은 이자비용은 이월규정에 따라 이월됨
- 이월 이자비용의 차기 공제는 EBITDA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300만유로 이상의 차입비용이 발생한 납세자만이 해당 이자비용을 이월할 수 있음
 - 5년의 기간 동안 이월할 수 있고, 시간 순으로 먼저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해 공제함
-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 세법 개정안은 의회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5년 간 조세수입을 115억유로²⁰⁾ 줄일 것으로 추정됨
-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 [룩셈부르크 - 이자비용 처리의 세법상 한도 가이드라인 발표]**
- 룩셈부르크 세무 당국은 2021년 1월 8일 이자비용 처리의 세법상 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함²¹⁾
- 가이드라인에서는 300만유로²²⁾와 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3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자비용만이 세법상 비용으로서 이익에 대해 차감할 수 있음을 밝힘
 - 납세자의 차입비용에는 모든 형태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과 이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타 비용,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20) 2021. 2. 4. 기준 원화 환산 시 15조 4,428억원임

21) IBFD, Luxembourg Clarifies Application of Interest Limitation Rule Under ATA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1-14_lu_1.html. 검색일자: 2021. 2. 3.

22) 2021. 2. 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억 4천만원임



[스페인 - 금융거래세와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스페인 재무부는 1월 11일 금융거래세와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해 납부기한의 연장을 발표함²³⁾

- 2020년 첫 분기에 의결된 금융거래세와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함
 - 금융거래세는 시가 총액이 10억유로²⁴⁾ 이상인 스페인 기업의 주식 매입액에 대해 0.2%가 부과되며, 매월 징수된 후 차월 10~20일 사이에 납부해야 함
 - 디지털서비스세는 국내와 해외 총수입의 합계액이 7억 5천만유로²⁵⁾를 초과하고, 스페인 국내에서의 수입이 300만유로²⁶⁾를 초과하는 기술 대기업들의 수익(revenue)의 3%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1분기에 대한 징수분은 4월이 납부기한이고, 상반기 징수분에 대한 납부기한은 7월임

■ 납부기한의 연장 이유는 해당 세금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의 승인 절차와, 납세자들이 새로운 세금에 대해서 적응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임

- 납부기한의 연장은 발표되었지만, 정확한 지급 일정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영국 - DAC 6 보고범위 축소]

■ 2020년 12월 31일 영국과 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서 영국의 EU 강제보고의무(DAC 6) 범위가 축소됨²⁷⁾

- 영국은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더 이상 EU DAC 6을 적용하지 않으며, OECD의 강제보고규정(Mandatory Disclosure Rules: MDR)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 이에 영국은 국제거래(Cross-boarder arrangement) 중 자동정보교환과 수익적 소유자와 관련된 지표인 Category D에 관해서만 OECD의 강제보고규정에 따라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DAC 6을 적용할 의무가 없음
 - Category D는 투명하지 않은 법적·수익적 소유권 사슬(chain)을 이용한 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법 규정이 강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를 활용한 거래를 포함하고 있음²⁸⁾

23) Bloomberg, Spain Delays Financial Transaction Tax, Digital Tax Payment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384PB600000007bc=W1siU2VhcmNoFJlc3VsdHMlCl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ZTZiYWE3MmE3NzRjMmUzYjk4YmU1MTJiMDU3NDU3NGYiXV0-1677e4496d46b8ef0d7ab62b7e2b3879a0972a98&bna_news_filter=daily-tax-report, 검색일자: 2021. 2. 8.

24) 2021. 2. 1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3,347억원임

25) 2021. 2. 1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10억 2,500만원임

26) 2021. 2. 1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억 410만원임

27) 영국 정부, The International Tax Enforcement (Disclosable Arrangements) (Amendment) (No. 2) (EU Exit) Regulations 2020,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0/1649/contents/made>, 검색일자: 2021. 3. 2.; KPMG, DAC 6 - Significant reduction in scope of the UK implementation, <https://home.kpmg/uk/en/home/insights/2021/01/tmd-dac6-significant-reduction-scope-of-the-uk-implementation.html>, 검색일자: 2021. 2. 18.

28) 삼일회계법인, Samil Global Tax Update, https://www.pwc.com/kr/ko/publications/global_tax_update/samilpwc_global-tax-update_mar2020.pdf, 검색일자: 2021. 2. 19.

- 변경사항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소급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윤 연구원>

납세자를 대신하여 보고서를 세무당국에 전자 제출함

-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프랑스 - 새로운 세무 준수 검토 프로세스 도입]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윤 연구원>

■ 2021년 1월 14일 프랑스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세금 확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발적 세무 준수 검토(Examen de Conformité Fiscale: ECF) 프로세스를 도입함²⁹⁾

- 세무 준수 검토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서 외부 감사인이 세법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기업과 외부 감사인 두 주체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짐
- 기업은 매출액 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예: 세무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세금 준수 검토 수행을 요청할 수 있음
- 검토범위는 전자 회계 파일의 적합성 및 품질, 현금 등록 소프트웨어, 보관 요구 사항, 법인세 및 부가세, 상각 등 회계처리와 관련된 10개 항목으로 제한됨
- 검토 후 감사인은 검토 수행 보고서를 발행하며,

[인도 - 2021년 예산안 발표]

■ 인도 재무부는 2021년 2월 1일 주요 세목과 세무행정 개편안이 포함된 2021년 예산안(Union Budget 2021/22)을 발표함³⁰⁾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세율에는 변동이 없음³¹⁾
- 직원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sation: EPFO)³²⁾에 대한 고용주 부담금을 연체할 경우 손금불산입함
- 영업권은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지만 구매로 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됨
-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이 은행(Banking Company)에 자산을 양도하고 대가로

29) 프랑스 정부, Décret n° 2021-25 du 13 janvier 2021 portant création de l'examen de conformité fiscale,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2963367>, 검색일자: 2021. 2. 18.; IBFD, France Introduces Voluntary Tax Audit by Private Auditor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1-14_fr_1.html, 검색일자: 2021. 2. 18.; KPMG, France: New tax compliance audit process; increased tax certainty for taxpayers,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1/01/tnf-france-new-tax-compliance-audit-process-increased-tax-certainty-for-taxpayers.html>, 검색일자: 2021. 2. 18.

30) IBFD, Union Budget 2021 - Highlight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2-01_in_1#tns_2021-02-01_in_1, 검색일자: 2021. 2. 22.; KEY TO THE BUDGET DOCUMENTS 2021-2022, https://www.indiabudget.gov.in/doc/Key_to_Budget_Document_2021.pdf, 검색일자: 2021. 2. 22.; IMPLEMENTATION OF BUDGET ANNOUNCEMENTS 2020-2021, <https://www.indiabudget.gov.in/doc/impbud2020-21.pdf>, 검색일자: 2021. 2. 22.; THE FINANCE BILL 2021, https://www.indiabudget.gov.in/doc/Finance_Bill.pdf, 검색일자: 2021. 2. 24.

31) IBFD, Union Budget 2021 - Direct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2-05_in_2.html, 검색일자: 2021. 2. 22.

32) 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sation, http://www.epfindia.gov.in/site_en/For_Employees.php, 검색일자: 2021. 2. 22.



협동조합은행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³³⁾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개인소득세율에는 변동이 없음
- 개인이 최초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원금 및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2년 3월 31일 까지 연간 최대 15만루피³⁴⁾ 한도 이내로 가능함
- 2021년 2월 1일 이후에 발행된 변액형보험(Unit-Linked Insurance)의 연간 보험료가 25만루피³⁵⁾를 초과하는 경우 만기 수익금은 과세됨
- 비거주 인도인(Non Resident Indian: NRI)³⁶⁾은 인도에서 1인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음
 - 또한, 비거주 인도인의 이중과세 철폐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임
-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 및 인프라투자신탁(Infrastructure Investment Trust: InvIT)에 대한 배당금은 원천징수세를 면제함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적격 스타트업은 면세자격(Tax Holiday for start-ups)을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음
- 매입세액공제는 공급업체가 전자 또는 종이 세

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 네트워크 포털(Goods and Services Tax Network Portal)에 전자 입력을 한 경우에 가능함³⁷⁾

- 노인구제책의 일환으로 만 75세 이상 노인 중 연금 및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³⁸⁾
 - 단, 연금 및 이자를 지불하는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함
- 납세자가 소득세 전자신고 시 신고서에 양도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세부사항이 미리 채움(Pre-Filled)될 예정임
 - 미리채움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치울 연구원>

[싱가포르 - 2021년 예산안 발표]

- 싱가포르 재무부는 2021년 2월 16일에 2021년 싱가포르 예산안을 발표함³⁹⁾
- 발표한 2021년 싱가포르 예산안 중 세계개편안에는 기업 지원, 현행 탄소세율 유지, 비영리기구 유지 지원, 적격 기부금세액공제 혜택 확대, 전기차

33) IBFD, Union Budget 2021 - Direct Tax, Financial servic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2-05_in_2#tns_2021-02-05_in_2, 검색일자: 2021. 2. 24.

34) 2021. 3. 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9만원임

35) 2021. 3. 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3만원임

36) 비거주 인도인이란, 인도 시민권자 또는 인도계 사람 중에서 인도 거주자가 아닌 자이며, 부모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인도 태생인 경우와 직전연도 인도에 60일 이상 182일 미만으로 거주했는지에 해당되고 직전 4개 연도 동안 인도에 365일 이상 거주했는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거주 인도인으로 봄

37) IBFD, Union Budget 2021 - Indirect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2-05_in_3.html, 검색일자: 2021. 2. 22.

38) IBFD, Union Budget 2021 - Tax Administration and Other Measur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2-05_in_4.html, 검색일자: 2021. 2. 22.

39) Singapore MOF, 2021 Budget Statement to be delivered on Tuesday, 2021. 2. 16., at 3pm, <https://www.mof.gov.sg/news-publications/press-releases/2021-budget-statement-to-be-delivered-on-tuesday-16-february-2021-at-3pm>, 검색일자: 2021. 2. 22.

및 전기차 택시 추가 등록세 인하, 도로세 환급 등이 포함됨⁴⁰⁾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손금의 소급공제(Loss Carry-Back Relief)⁴¹⁾를 실시함
 - 2021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미사용 자본공제액과 이월 결손금(미사용분) 등 적격 공제에 대해 최대 10만싱가포르달러⁴²⁾ 한도로 3년간 소급공제가 가능함
- 시설 및 기계장치(Plant and Machinery: P&M)의 자본 지출액에 대해 가속공제를 위한 옵션을 추가함
 - 추가된 옵션은 첫 해에 자본 지출액의 75%를 공제받고 두 번째 해에 자본 지출액의 25%를 공제받는 것임
 - 기업은 싱가포르 소득세법 19A조에 따라 시설 및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33.3%씩 공제받는 옵션 또는 자본 지출액이 발생한 평가연도에 100% 공제받는 옵션 그리고 추가된 옵션 중에 선택 가능함
- 현행 탄소세율을 2023년까지 유지함
 -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 탄소세를 시행하고

온실가스 배출 1톤당 5싱가포르달러⁴³⁾의 탄소세율을 정함

- 싱가포르에 비영리기구(Non-for-Profit Organization: NPO)를 계속 유치하기 위해 적격 비영리기구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을 2022년 3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싱가포르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공공기관(Institutions of a Public Character: IPC) 및 기타 자격 있는 수혜자에 대한 적격 기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50%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및 전기차 택시(Electric taxi)의 추가 등록세(Additional Registration Fee: ARF)를 최대 2만싱가포르달러⁴⁴⁾로 2023년 12월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함
-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최대 100%의 도로세 환급이 가능함⁴⁵⁾
 - 환급액의 경우 차량의 배기량 및 최대 적재중량에 따라 결정되어 자격이 있는 수령인에게 자동으로 지급되고, 생계를 위해 차량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임

<자료수집 및 조사: 김치을 연구원>

40) Singapore MOF, 2021 Budget, ANNEX F-1: TAX CHANGES, <https://www.mof.gov.sg/docs/librariesprovider3/budget2021/download/pdf/annexf1.pdf>, 검색일자: 2021. 2. 24; IBFD, Singapore Extends Incentives for Qualifying Expenses and Extends GST to Imported Low-Value Goods in 2021 Budget,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2-16_sg.1.html, 검색일자: 2021. 2. 22.

41) IRAS, Loss Carry-Back Relief,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Claiming-Reliefs/Loss-Carry-Back-Relief/>, 검색일자: 2021. 2. 24.

42) 2021. 3. 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419만원임

43) 2021. 3. 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10원임

44) 2021. 3. 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83만원임

45) LTA, Road Tax Rebates for Petrol and Petrol-Hybrid Vehicles, <https://www.lta.gov.sg/content/ltagov/en/newsroom/2021/2/news-releases/road-tax-rebates-for-petrol-and-petrol-hybrid-vehicles.html>, 검색일자: 2021. 2. 24.



[인도네시아 - 코로나19 대응 기업 세제혜택 적용방안 발표]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1년 2월 2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기업 세제혜택 적용방안이 포함된 재무부 규정 9호(No. 9/PMK.30/2021: PMK-9)를 발표함⁴⁶⁾
- 적격 기업은 원천징수세 면제, 법인세 감면,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세제혜택을 2021년 6월까지 적용 가능함⁴⁷⁾
 - 연간 근로소득이 2억루피아⁴⁸⁾를 초과하지 않는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를 면제함
 - 적격 중소기업(Small to Medium Enterprise: SME)의 법인세 최종 납부세액의 0.5%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담함
 - 적격 기업의 월선납 법인세 납부세액을 50%까지 감면함
 - 월선납 법인세는 직전연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다음 해에 매월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임
 - 관개(Water Irrigation)사업⁴⁹⁾과 관련된 건설업의 경우 최종 분리과세 납부세액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담함

- 인도네시아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48억루피아⁵⁰⁾ 이하인 개인과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최종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업의 경우 시공·설계·감리 등의 건설업 범위와 자격에 따라 2~6%의 최종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됨
- 최종 분리과세 납부세액은 납세자가 직접 인도네시아 과세관청에 계산, 납부 및 보고를 해야 함
- 적격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50억루피아⁵¹⁾ 한도로 가능함
 -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 일반 환급의 경우 환급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세무조사와 환급금 지급이 이뤄짐
 - 조기 환급은 저위험 납세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만 해당됨
 -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해당되는 기업은 조기 환급의 절차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이 이뤄짐

■ 세제혜택별 적격 기업 요건은 인도네시아 재무부 규정 9호에서 확인할 수 있음⁵²⁾

46) NOMOR 9/PMK.03/2021, <https://jdih.kemenkeu.go.id/download/60b9e432-e111-4a92-a65f-7e760bb67750/9~PMK.03~2021Per.pdf>, 검색일자: 2021. 2. 22.

47) IBFD, COVID-19 Pandemic: Indonesia Further Extends Tax Incentives and Expands List of Eligible Business Sector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2-05_id_1.html, 검색일자: 2021. 2. 22.

48) 2021. 3. 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76만원임

49) 관개사업이란, 작물의 재배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급수 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것을 말함

50) 2021. 3. 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8천만원임

51) 2021. 3. 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9,400만원임

52) NOMOR 9/PMK.03/2021, pp. 35~59, <https://jdih.kemenkeu.go.id/download/60b9e432-e111-4a92-a65f-7e760bb67750/9~PMK.03~2021Per.pdf>, 검색일자: 2021. 2. 25.

-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2021년 3월 20일까지 홈페이지(www.pajak.go.id)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치울 연구원>

[뉴질랜드 -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법안 통과]

- 뉴질랜드 의회는 2021년 2월 16일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법안을 통과시킴⁵³⁾

- 코로나19 재기지원금(COVID-19 Resurgence Support Payment: CRSP)제도 신설과 최소소득 가정 세액공제(Minimum Family Tax Credit) 기준 재설정이 조세지원법안에 포함됨

- 코로나19 재기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은 납세자를 지원하는 조세 지원제도이며 뉴질랜드 국세청에서 관리·감독함⁵⁴⁾

- 코로나19 경고레벨이 2 이상으로 증가하고 7일 이상 지속될 경우 활성화됨
- 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급 대상자는 최소 6개월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최대 30%의 수익 감소를 겪은 기업이어야 함

- 수익 감소 여부는 재기지원금제도가 활성화되는 시점의 전 6주 동안과 코로나19 이전의 일관적인 수익을 비교하여 계산함

- 재기지원금은 기본금액 1,500뉴질랜드달러⁵⁵⁾와 풀타임 근무자(Full-TimeEquivalent: FTE) 1인당 400뉴질랜드달러⁵⁶⁾로 구성됨

- 재기지원금의 기본금액 외 풀타임 근무자 한도는 2만뉴질랜드달러⁵⁷⁾로 풀타임 근무자를 50명까지 인정하지만, 풀타임 근무자가 50명 이상인 기업도 재기지원금을 한도까지 받을 수 있음

- 2021~2022년 과세연도의 최소소득가정 세액공제 기준을 재설정함⁵⁸⁾

- 최소소득가정 세액공제는 일하는 가족이면서 연간 세후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족에게 주어짐
- 최소소득가정 세액공제의 자격자는 근로소득자이며, 주당 최소 20시간을 일하는 한부모가정이나, 주당 최소 30시간을 일하는 부부 등이 해당됨
- 2021~2022년 과세연도 연간 세후소득 기준금액은 3만 576뉴질랜드달러⁵⁹⁾로 전년도 기준금액 2만 9,432뉴질랜드달러⁶⁰⁾보다 1,144뉴질랜드달러⁶¹⁾ 증가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치울 연구원>

53) New Zealand, Taxation (COVID-19 Resurgence Support Payments and Other Matters) Bill, <https://www.legislation.govt.nz/bill/government/2021/0008/5.0/whole.html#LMS452935>, 검색일자: 2021. 2. 22.

54) IBFD, COVID-19 Pandemic: Parliament Passes COVID-19 Resurgence Support Payments Bill,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2-17_nz_1.html, 검색일자: 2021. 2. 22.

55) 2021. 3. 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3만원임

56) 2021. 3. 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만원임

57) 2021. 3. 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47만원임

58) Inland Revenue, Types of working for Families payments, <https://www.ird.govt.nz/working-for-families/payment-types>, 검색일자: 2021. 2. 25.

59) 2021. 3. 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18만원임

60) 2021. 3. 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24만원임

61) 2021. 3. 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4만원임



[OECD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제 조세조약 지침 재검토]

■ OECD는 2021년 1월 21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국제 조세조약 지침(Guidance on Impact of COVID-19 Crisis on International Tax Treaty Rules)을 업데이트함⁶²⁾

- 2020년 4월 3일에 발표된 지침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상황들을 추가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논의된 지침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함
- 고정사업장 창설, 기업 및 개인의 거주지 변경, 고용소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공중보건 조치로 인한 재택근무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사건으로 새로운 고정사업장 창설이나 기존의 고정사업장 폐지가 불가능함을 명시함

- 공중보건 조치에 따른 재택근무는 고용주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예외적인 사건으로 재택근무의 영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홈오피스를 고정사업장으로 만들 수 없음
- 대리인(agent)이 공중보건 조치에 따라 재택근무 중에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활동을 체결한다고 하여 새로운 고정사업장을 창설할 수 없음
-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대리인이 관행

적/반복적으로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해온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창설할 수도 있음

- 코로나19 유행의 특수한 상황으로 건설 현장의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하여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상황이 법인 및 개인의 거주지를 변경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 특히, 업데이트된 지침은 공중보건 조치에 따라 이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중거주자의 경우 영구주택을 가질 가능성이 없는 한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지 판정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업데이트된 지침은 고용소득과 관련한 예외적인 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공중보건 조치로 인하여 이동이 금지된 직원은 OECD 모델의 제15조 2항에 따른 거주일수 산정시 해당 관할권에서 추가로 소요된 일수를 무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⁶³⁾
- 종업원이 다른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고용주를 위하여 원격으로 근무하는 경우 종업원의 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 권리가 다른 관할권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과세 권리는 기존 과세 권리를 대체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윤 연구원>

62) IBFD, COVID-19 Pandemic: OECD Revisits Guidance on Impact of COVID-19 Crisis on International Tax Treaty Rul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1-22_o2_1.html, 검색일자: 2021. 2. 16.; EY, OECD Secretariat issues updated guidance on tax treaties and the impact of COVID-19 pandemic, https://www.ey.com/en_gl/tax-alerts/oecd-secretariat-issues-updated-guidance-on-tax-treaties-and-the, 검색일자: 2021. 2. 18

63) OECD, ARTICLES OF THE MODEL CONVEN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CAPITAL, <https://www.oecd.org/ctp/treaties/articles-model-tax-convention-2017.pdf>, 검색일자: 2021. 3. 2

주요국의 재정동향



■ EU 집행위, 2020 채무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표 (2021. 2. 5.)¹⁾

※ 3년마다 발간되는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 EU 회원국의 단·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변화를 분석)의 매년 중간 업데이트 보고서

- (채무 전망) 2020년 EU 및 유로지역의 채무가 급증하였으나, 점차 안정화되어 2031년 EU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90%로 전망되며, 유로지역은 98%로 전망²⁾
- (단기 지속가능성³⁾)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대응으로 인해 2020년 공공재정은 갑작스럽게 악화되었으나, 건전한 민간부문 및 대외 포지션으로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는 덜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됨
 - 2009년에는 거시경제 불균형으로 인해 17개 국가에서 단기 재정위험을 나타냄

- 2020년 11개 국가에서 단기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인 S0의 기준치(0.46)를 초과하여 단기 재정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평가

- (중기 지속가능성⁴⁾) 중기 재정위험이 높은 국가는 8개국으로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채무 비율이 높았거나, 코로나19의 영향과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국가들이 해당됨
 - (코로나19 이전 높은 채무 비율 국가) GDP 대비 채무 비율이 90% 이상인 국가들로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이 해당
 - (코로나19 영향과 채무 감소가 느린 국가)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국가) 루마니아가 해당되며, 2031년에 채무 비율을 고위험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 (장기 지속가능성⁵⁾) 5개국의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위험이 높으며, 특히 고령화 비용 증가로 인한 국가는 룩셈부르크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이며, 벨기에와 슬로베니아는 큰 규모의 재정갭으로 장기 재정 위험이 높음

1) European Commission,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2. 5.,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debt-sustainability-monitor-2020_en
 2) 채무 비율 개선 전망은 기초재정수지의 점진적 개선과 금리와 성장을 차이(r-g)의 마이너스 값 가정하에 도출
 3) 단기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지표인 S0 지표는 12개의 재정변수(재정수지, 총채무, 채무 변화율, 총자금조달필요 등)와 13개의 금융 관련 변수(순국채투자지위, 민간부문 채무, 단기 가계채무, 단위당 명목 노동비용, 실질GDP 성장률 등)로 구성되며, 세부 지표들을 통해 단기 재정 리스크를 파악하고, 실행이 필요한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함. 구체적인 세부 지표 및 평가 기준 등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의 p.22, pp.223~224 참고
 4) 중기 지속가능성은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분석과 S1 지표로 파악하며, S1 지표는 중기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조정 규모를 측정. 보다 구체적으로 고령화 비용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포함하여 15년 내에 GDP 대비 채무 비율 60%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재정수지(5년 누적)의 조정규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의 pp. 225~229 참고
 5) · 장기 지속가능성은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분석과 S2 지표로 파악하고, 정부의 시점 간 예산제약(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 달성과 관련이 있음. 예산제약은 장기(무한 기간)적으로 미래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채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냄. 이 조건에서 정부채무가 장기적으로 (2070년까지) 안정화되어야 함
 · S2 지표는 장기 지속가능성 분석의 주요 요소로 정부 예산 제약의 무한 기간을 설정하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비용 조달 등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재정수지 조정규모를 측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의 pp.225~229 참고



<표 1> EU 회원국의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표

구분	단기 리스크 (Overall SHORT-TERM risk category)	중기 리스크 (Overall MEDIUM-TERM risk category)	S1 지표 (S1 indicator- overall risk assessment)	채무 지속가능성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overall risk assessment)	S2 지표 (S2 indicator- overall risk assessment)	장기 리스크 (Overall LONG-TERM risk category)
벨기에	HIGH (LOW)	HIGH	HIGH	HIGH	MEDIUM	HIGH
불가리아	LOW	LOW	LOW	LOW	MEDIUM (LOW)	MEDIUM (LOW)
체코	LOW	LOW	LOW	LOW	MEDIUM	MEDIUM
덴마크	LOW	LOW	LOW	LOW	LOW	LOW
독일	LOW	LOW	LOW	LOW	MEDIUM	MEDIUM
에스토니아	LOW	LOW	LOW	LOW	LOW	LOW
아일랜드	LOW	LOW	LOW	LOW	MEDIUM	MEDIUM
스페인	HIGH (LOW)	HIGH	HIGH	HIGH	LOW	MEDIUM
프랑스	HIGH (LOW)	HIGH	HIGH	HIGH	LOW	MEDIUM
크로아티아	HIGH (LOW)	MEDIUM (LOW)	LOW	MEDIUM (LOW)	LOW	MEDIUM (LOW)
이탈리아	HIGH (LOW)	HIGH	HIGH	HIGH	LOW (MEDIUM)	MEDIUM (LOW)
키프로스	HIGH (LOW)	MEDIUM (LOW)	LOW	MEDIUM (LOW)	LOW	MEDIUM (LOW)
라트비아	HIGH (LOW)	LOW	LOW	LOW	LOW	LOW
리투아니아	LOW	LOW	LOW	LOW	LOW	LOW
룩셈부르크	LOW	LOW	LOW	LOW	HIGH	HIGH
헝가리	LOW	MEDIUM (LOW)	LOW	MEDIUM (LOW)	MEDIUM	MEDIUM
몰타	LOW	LOW	LOW	LOW	MEDIUM	MEDIUM
네덜란드	LOW	MEDIUM (LOW)	MEDIUM (LOW)	MEDIUM (LOW)	MEDIUM	MEDIUM
오스트리아	LOW	MEDIUM (LOW)	LOW	MEDIUM (LOW)	MEDIUM	MEDIUM
폴란드	LOW	LOW	LOW	LOW	LOW	LOW
포르투갈	HIGH (LOW)	HIGH	MEDIUM	HIGH	LOW	MEDIUM
루마니아	HIGH (LOW)	HIGH	HIGH	HIGH	HIGH	HIGH
슬로베니아	LOW	HIGH (LOW)	MEDIUM (LOW)	HIGH (LOW)	MEDIUM	HIGH (MEDIUM)
슬로바키아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MEDIUM)	HIGH (MEDIUM)
핀란드	HIGH (LOW)	MEDIUM	MEDIUM	MEDIUM	MEDIUM	MEDIUM
스웨덴	LOW	LOW	LOW	LOW	MEDIUM (LOW)	MEDIUM (LOW)

주: 1) 괄호 안은 2019년 채무 지속가능성 보고서(FSR 2019) 평가 수치

2) 단기 재정 리스크는 재정 및 금융 변수로 측정된 S0 지표를 기초로 등급을 평가

3) 중기 재정 리스크는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과 S1 지표(고령화 비용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포함하여 15년 내에 GDP 대비 채무 비율 60%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재정수지(5년 누적)의 조정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평가

4) 장기 재정 리스크는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과 S2 지표(정부 예산 제약의 무한 기간을 설정하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비용 조달 등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 재정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재정수지 조정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평가

5) 벨기에에는 코로나19 이전 90% 이상의 높은 채무 비율 국가로 GDP 대비 채무비율이 2019년 98.1%, 2020년 117.7%로 증가, 2021년에는 117.8%, 2022년 118.6%, 2023년 121.0%로 전망되어 채무 감소 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중·장기 모두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한 조정규모가 큰 관계로 시기별 리스크가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됨

출처: European Commission(2020),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Table 1.

<표 2> 2021년 겨울 경제전망 - EU 및 유로지역

구분	실질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2021년 겨울 전망			2020년 가을 전망			2021년 겨울 전망			2020년 가을 전망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유로지역	-6.8	3.8	3.8	-7.8	4.2	3.0	0.3	1.4	1.3	0.3	1.1	1.3
EU	-6.3	3.7	3.9	-7.4	4.1	3.0	0.7	1.5	1.5	0.7	1.3	1.5

출처: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21(Interim), 2021, Table 1

■ EU 집행위, 2021년 겨울 경제전망 발표(2021. 2. 11.)⁶⁾

※ EU 집행위원회는 연 4회 EU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으며, 겨울과 여름 전망은 중간 전망의 성격으로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중점으로 다루며, 이번 겨울 전망에서는 2020년 11월 5일 발표된 가을전망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담고 있음

- (동향) 가을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많은 회원국에서 봉쇄 조치를 재도입하거나 강화하게 되었으나, 최근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등 경제 회복 가능성이 높아짐
 - EU와 영국의 협상타결, 회복·복구수단,⁷⁾ 백신 접종으로 봉쇄 조치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3분기에 민간소비 주도로 세계 교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경제 전망) EU 전체 경제성장률은 2021년 3.7%, 2022년 3.9%로 전망되며, 유로지역은 두 해 모두 3.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물가) 기저효과로 인한 일시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되어 2021년 EU와 유로지역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1.5%, 1.4%로 가을전망 대비 0.2%p, 0.3%p 상승했으며, 2022년에는 가을전망과 동일한 1.5%, 1.3%로 전망

- (리스크) 백신 접종과 위기 이후 낙관주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팬데믹 상황이 보다 길어지거나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혹은 장기화된 위기로 경제·사회 구조에 영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남을 수 있음
- 주요 국가 경제전망
 - (독일) 2021년 경제성장률은 3.2%로 반등하여 올해 말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⁸⁾ 2021년에는 올해 하반기 성장 모멘텀에 힘입어 3.1% 전망
 - (프랑스) 2021년 3분기에 엄격한 이동 제한 조치의 해제 및 회복계획의 실행으로 경제활동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1년 성장률은

6)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21,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european-economic-forecast-winter-2021_en, 검색 일자: 2021. 2. 15.

7) 회복 및 복구 수단(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은 지난 2020년 7월 17~21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7,500억유로의 경제회복기금 "Next Generation EU"의 주요 정책 수단. EU 차원에서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개혁 및 공공투자 등에 대규모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녹색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잘 대비하도록 함

8)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가 2021년 2월 2일 발표한 연례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이 위기 이전 경제 수준으로 회복하는 시기를 2022년 중반으로 전망하고 있어 EU 경제전망과 약간의 예측 차이가 있음(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https://www.bmwi.de/Redaktion/DE/Publikationen/Wirtschaft/jahreswirtschaftsbericht-2021.html>)



5.5%, 2022년 4.4%로 전망

- (스페인) 2021년 초 코로나19 감염률의 증가로 이동제한 조치가 강화되었으나, 백신접종 진행으로 제한이 완화되고 있으며, 관광업이 약하게 회복되면서 2021년 경제성장률은 5.6%로 전망되고, 2022년에는 5.3%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이탈리아) 소득과 일자리에 미치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정책에 따라 회복이 좌우되며, 2022년 말까지 2019년 경제수준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
 - 2021년 경제성장률은 3.4%, 2022년은 3.5%로 전망되나, Next Generation EU 지원이 전망 가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경제성장률 전망에 상방 리스크가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선임연구원>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는 2020년 -3.5% 역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 최근 백신이 승인되어 올해 말 코로나19로부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지만 재확산·재봉쇄와 변종 바이러스가 우려되고 있어 세계경제는 2021년 5.5%, 2022년 4.2% 성장할 전망(<표 3> 참조)
- 정부 정책은 회복이 확실히 진행될 때까지 효과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동시에, 잠재 생산을 높이고 탄소 의존도를 낮추는 전환을 가속화하며 참여적 성장(participatory growth)을 촉진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함
- 한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다자간 협력이 필요

■ IMF,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1. 1. 27.)¹⁰⁾

* 이사회 상정 전 협의단 입장문임

- 한국 경제는 2020년 견고한 거시경제 기초,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응, 포괄적인 재정·통화·금융 조치에 힘입어 -1% 역성장에 그쳤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제약들의 해제와 대외수요 회복으로 3.1% 성장할 전망(<표 3> 참조)
- 향후 정책은 진행 중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복원력 있고 친환경·포용적인 중기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IMF

■ IMF,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2021. 1. 26.)⁹⁾

- 코로나19가 여성, 청년, 빈곤층, 비공식 취업자 및 대면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악

9)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1, 2021. 1. 26.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1/Update/January/English/text.ashx>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1/Update/January/English/data/WEOJan2021update.ashx>

10) IMF, IMF Staff Completes 2021 Article IV Mission to Republic of Korea(영문), 2021. 1. 27.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1/27/pr2125-korea-imf-staff-completes-2021-article-iv-mission-to-republic-of-korea>

IMF, 2021년 IMF -한국 연례협의의 (Article IV Mission) 마무리(국문), 2021. 1. 27.

<https://www.imf.org/ko/News/Articles/2021/01/27/pr2125-korea-imf-staff-completes-2021-article-iv-mission-to-republic-of-korea>

<표 3> 세계 경제 전망

(단위: 다른 표기가 없는 경우 전년 대비 % 변화)

구분	추정	전망		2020년 10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20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세계 경제	-3.5	5.5	4.2	0.3	0.0
선진국	-4.9	4.3	3.1	0.4	0.2
미국	-3.4	5.1	2.5	2.0	-0.4
유로지역	-7.2	4.2	3.6	-1.0	0.5
독일	-5.4	3.5	3.1	-0.7	0.0
프랑스	-9.0	5.5	4.1	-0.5	1.2
이탈리아	-9.2	3.0	3.6	-2.2	1.0
스페인	-11.1	5.9	4.7	-1.3	0.2
일본	-5.1	3.1	2.4	0.8	0.7
영국	-10.0	4.5	5.0	-1.4	1.8
캐나다	-5.5	3.6	4.1	-1.6	0.7
한국	-1.1	3.1	2.9	0.2	-0.2
신흥개도국	-2.4	6.3	5.0	0.3	-0.1
아시아 신흥개도국	-1.1	8.3	5.9	0.3	-0.4
중국	2.3	8.1	5.6	-0.1	-0.2
유럽 신흥개도국	-2.8	4.0	3.9	0.1	0.5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7.4	4.1	2.9	0.5	0.2
중동 및 중앙 아시아	-3.2	3.0	4.2	0.0	0.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6	3.2	3.9	0.1	-0.1
저소득 개도국	-0.8	5.1	5.5	0.2	0.0
세계무역(재화 및 서비스) ²⁾	-9.6	8.1	6.3	-0.2	0.9
선진국	-10.1	7.5	6.1	0.4	1.0
신흥개도국	-8.9	9.2	6.7	-1.0	0.8
원자재 가격(미국달러)					
오일 ³⁾	-32.7	21.2	-2.4	9.2	-5.4
비연료	6.7	12.8	-1.5	7.7	-2.0
소비자 물가(미국달러)					
선진국 ⁴⁾	0.7	1.3	1.5	-0.3	-0.1
신흥개도국 ⁵⁾	5.0	4.2	4.2	-0.5	-0.1
런던 은행 간 금리(%)					
미 달러 예금(6개월)	0.7	0.3	0.4	-0.1	-0.1
유로 예금(3개월)	-0.4	-0.5	-0.6	0.0	-0.1
일본 엔 예금(6개월)	0.0	-0.1	-0.1	-0.1	-0.1

주: 1. 실질실효환율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

1)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0

2) 수출입량 증가율의 단순 평균

3) 영국 브렌트, 두바이 파테, 서부텍사스 중질유의 단순 평균 가격. 2020년 원유의 평균 가격은 배럴당 41.29달러, 선물시장에 기초한 가격은 2021년 50.03달러, 2021년은 48.82달러

4) 2021년, 2022년 인플레이션은 각각 0.9%, 1.2%(유로지역), -0.1%, 0.5%(일본), 2.1%, 2.1%(미국)

5) 베네수엘라 제외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1, Table 1

한국은행,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1/Update/January/English/data/WEOJan2021update.aspx>



■ IMF, 재정감시 업데이트(Fiscal Monitor Update)* 발표(2021. 1. 28.)¹¹⁾

* IMF는 통상 연 2회(4월, 10월) 재정감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이례적으로 이번 업데이트 보고서를 발간

-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지원은 생명과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코로나19가 소비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했음
- 지난 보고서 이후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은 신규 재정 조치를 발표하거나 기존 임시 조치를 연장했고 일부 유로 지역 회원국은 새로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2020년 각국은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시행
- 이러한 재정지출 확대는 경제 위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더불어 재정적자와 공공채무를 증가시킴
- 2021년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회복이 진행되고 일시적인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고 지출이 감소해 재정적자가 감소할 전망
- 치료제와 백신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며, 회복이 확실히 진행될 때까지 취약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나 대유행과 경제 변화 양상에 맞춰 조정이 필요
- 재정정책은 재정 및 금융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회복을 지원하고 친환경, 디지털 및 포용적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선임연구원>



■ 녹색예산태깅(Green Budget Tagging) 보고서 발표(2021. 2. 13.)^{12), 13)}

- 각 국가들이 기후 및 환경 목표, 공공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해 재정계획 및 예산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녹색예산태깅을 발표
 - 녹색예산태깅은 녹색 목표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태그(tag)’를 부여하여 예산정책을 평가
- 녹색예산태깅을 도입한 국가들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 기후 관련 예산항목에 초점을 둔 국가(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아일랜드)와 기후 또는 기타 환경부문에 초점을 둔 국가(프랑스, 이탈리아, 필리핀)로 구분
 - (아일랜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출에 대해 태깅하고 있으며 국제자본시장협회(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의 ‘녹색지출(green expenditure)’의 정의를 따르고 있음
 - (프랑스) 환경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개선을 목적으로 녹색예산태깅

11) IMF, Fiscal Monitor Update, January 2021, 2021. 1. 28.,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1/01/20/fiscal-monitor-update-january-2021>

12) OECD, https://www.oecd-ilibrary.org/governance/green-budget-tagging_fe7bfcc4-en

13) 2017년 12월 녹색 예산(Green Budgeting)에 관한 OECD 파리협약을 통해 기후 및 광범위한 환경목표를 예산프로세스와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경험과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 4월 기후 정책 재무장관 연합(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Action)은 재정정책과 공공재정 사용을 통해 각국의 기후정책을 마련하는 6가지 ‘헬싱키 원칙(Helsinki Principles)’에 서명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3월 제2호, 2020 참고

<표 4> 녹색예산태깅을 도입한 국가들의 분류체계

구분	국가	녹색예산태깅 목적	분류체계
기후 관련 예산항목에 초점	방글라데시	기후금융관리 목적	국가 기후변화 정책하의 6개 영역 또는 44개 프로그램 분류에 따름(식량안보, 사회보호, 건강, 포괄적인 재난관리 등)
	콜롬비아	UN기후변화협약의 국가 목표 달성	12개 분야에 해당할 경우
	아일랜드	기후변화 해결	국제자본시장협회(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의 '녹색지출(green expenditure)'의 정의에 따름
기후 또는 기타 환경부문에 초점	프랑스	환경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	EU 녹색분류체계(the EU Taxonomy)에 정의된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대기 질 등 6가지 범주에 따라 분류
	이탈리아	환경지출에 대한 투명성 개선	환경 관련 경제정보 수집을 위한 유럽시스템(SERIEE)의 정의에 따라 환경보호 및 환경파괴를 감소시키는 재정지출 항목에 태깅
	필리핀	국가기후변화대응계획(National Climate Change Action Plan)에 명시된 지출우선순위 관리	7가지 지출영역(식량안보, 물 부족, 생태계 환경 및 생태적 안정성, 지속 가능한 에너지 등)에서 태깅 가능

출처: OECD, Green Budget Tagging INTRODUCTORY GUIDANCE & PRINCIPLES, Table 1, 2021. 2. 13.

을 도입하였으며, 예산 항목을 EU 녹색분류 체계(the EU Taxonomy)에 정의된 기후변화 적응, 생물 다양성, 대기질 등 6가지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 (이탈리아) 이탈리아 의회는 환경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예산태깅을 도입하였으며, 환경 관련 경제정보 수집을 위한 유럽시스템(SERIEE)의 정의에 따라 환경보호 및 환경파괴를 감소시키는 재정지출 항목에 태깅함

■ 2020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 발표(2021. 2. 18.)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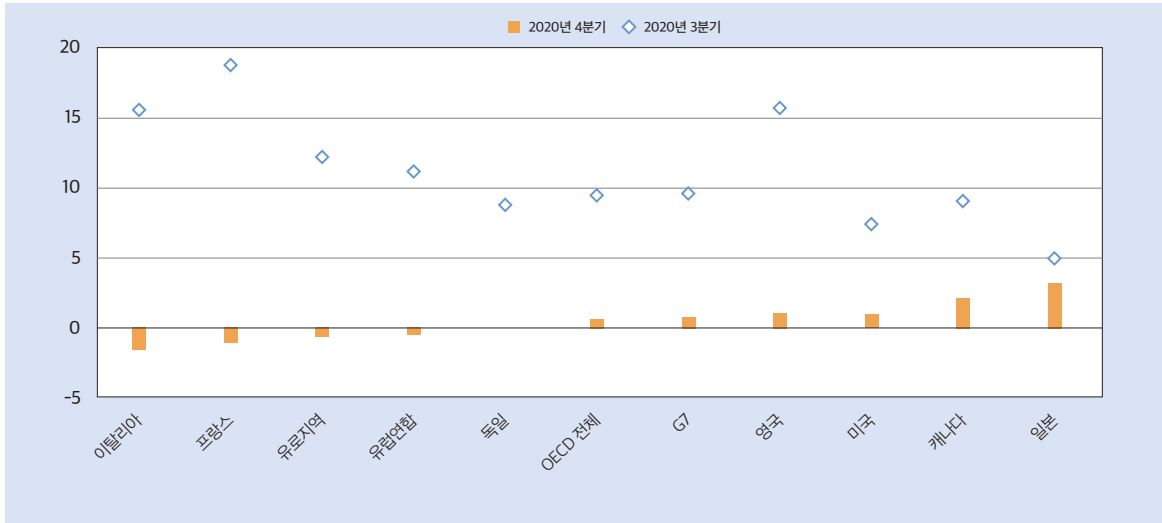
- 2020년 4분기 OECD 국가들의 실질GDP 성장률은 0.7%로 전분기 대비 8.5%p 하락
 - 2020년 상반기 OECD 국가들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실질GDP 성장률이 전례없는 하락을 기록하여 2020년 3분기에 크게 반등을 보였으나 4분기에 다시 둔화됨
 - G7 국가들의 2020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0.8%로 둔화된 것으로 보이며 일본(3%), 캐나다(1.9%), 미국 및 영국(양국 모두 1.0%), 독일(0.1%)를 기록
 - 2020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 분기 강한 반등 이후 크게 하락한 국가는 이탈리아

14) OECD, <https://www.oecd.org/sdd/na/gdp-growth-fourth-quarter-2020-oecd.htm>



[그림 1] 2020년 3분기 실질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계절조정)

(단위: %)



출처: OECD GDP Growth - Fourth quarter of 2020, 2021. 2. 18.

<표 5> 2020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19년				2019년	2020년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OECD 전체	0.6	0.4	0.4	0.2	1.6	-1.9	-10.5	9.2	0.7	-4.9
G20	0.9	0.8	0.5	0.4	2.8	-3.2	-6.6	7.7	-	-
유럽연합	0.6	0.3	0.3	0.2	1.6	-3.3	-11.4	11.5	-0.4	-6.3
유로지역	0.5	0.2	0.2	0.1	1.3	-3.7	-11.7	12.4	-0.6	-6.7
G7	0.6	0.2	0.4	0.0	1.5	-2.0	-10.4	9.2	0.8	-5.1
캐나다	0.1	1.1	0.5	0.1	1.9	-1.9	-11.3	8.9	1.9	-5.4
프랑스	0.5	0.3	0.1	-0.2	1.5	-5.9	-13.7	18.5	-1.3	-8.2
독일	0.6	-0.5	0.3	0.0	0.6	-2.0	-9.7	8.5	0.1	-5.0
이탈리아	0.2	0.2	0.0	-0.4	0.3	-5.5	-13.0	16.0	-2.0	-8.9
일본	0.6	0.1	0.2	-1.8	0.3	-0.6	-8.3	5.3	3.0	-4.8
영국	0.6	0.1	0.5	0.0	1.4	-2.9	-19.0	16.1	1.0	-9.9
미국	0.7	0.4	0.6	0.6	2.2	-1.3	-9.0	7.5	1.0	-3.5

출처: OECD GDP Growth - Fourth quarter of 2020, 2021. 2. 18.

(16.0%→2.0%)와 프랑스(18.5%→1.3%)로 나타남

- 유로지역과 유럽연합의 2020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0.6%, -0.4%를 기록

※ 한국: (2020년 3분기) 2.1%, (2020년 4분기) 1.1%

- 2020년 전체 OECD 국가들의 실질GDP 성장률은 -4.9%로 전분기 대비 8.5%p 하락
- 2020년 거의 모든 국가들의 GDP 성장률은 하락하였으며 전년 대비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인 국가는 영국 -9.9%, 이탈리아 -8.9%, 프랑스 -8.2%로 나타남(<표 5> 참조)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선임연구원>



미국

[예산·결산 등]

- 미 의회, 2021 회계연도 예산결의안¹⁵⁾(S.Con. Res.5) 통과 의결(2021. 2. 5.)¹⁶⁾

* 동 예산결의안은 상원에서 발의(2.2.)되어 공화당과 민주당의 표결이 50:50의 동률을 보이면서 양당이 참여하게 대립하였으나,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개입으로 51:50으로 통과됨

- 의회는 2021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결의와 함께 2022~2030 회계연도의 연방 수입, 신규 예산권한, 지출, 재정적자, 국가채무 등에 대한 적정 예산규모(recommended budgetary levels)를 책

정함(<표 6> 참조)

* 예산결의안은 일반적으로 대통령 예산안이 발표되면 미 의회 양원이 예산안을 참고로 하여 예산결의안 심의 및 작성에 착수함

- 이번 결의안의 주요 핵심은 바이든이 제시한 미국 회복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며, 이와 관련된 안전에 대해 신속 처리 절차(expedited legislative procedures)를 부여함

- 의회예산처(CBO), 2021~2031년 재정 및 경제 기준선 전망 발표(2021. 2. 11.)¹⁷⁾

- 2021년 재정적자 전망치는 2020년 규모 대비 9천억달러 감소한 2.3조달러(GDP 대비 10.3%)이며, 1945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GDP의 4% 수준으로 감소하다가, 이후 소폭 증가해 2031년에는 5.7%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수입) 연방세입은 전년 대비 2.5%(860억달러) 증가한 3.5조달러 전망(GDP 대비 16.0%)
- 일시적인 코로나19 관련 정책의 종료, 예정된 세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지출) 2021년 연방지출은 전년 대비 12%(7,880억 달러) 감소한 5.7조달러 전망(GDP 대비 26.3%)
-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감소하고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지출 감소가 예상됨

15) 1974년 의회예산법(The 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결의안은 의회의 예산위원회가 담당하며, 연방 정부의 세입 및 세출 총액을 포함하고 있음(예산 구분: 20개의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음)

16) 의회 하원, <https://budget.house.gov/news/press-releases/chairman-yarmuth-statement-congressional-passage-2021-budget-resolution>

17)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1 to 2031, 2021. 2. 11., <https://www.cbo.gov/publication/56970>



<표 6> 미국 예산기준선 전망 비교(2021년 2월 vs 2020년 9월)

재정전망		실적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예산 총량(십억달러)													
수입	2월	3,420	3,506	3,995	4,202	4,352	4,507	4,817	5,097	5,243	5,408	5,577	5,771
	9월		3,256	3,739	3,980	4,146	4,334	4,656	4,952	5,123	5,296	5,457	-
지출	2월	6,552	5,764	5,050	5,165	5,258	5,544	5,843	6,145	6,595	6,754	7,227	7,654
	9월		5,066	5,075	5,104	5,226	5,507	5,772	6,033	6,456	6,602	7,084	-
재정적자	2월	3,132	2,258	1,056	963	905	1,037	1,026	1,048	1,352	1,346	1,650	1,883
	9월		1,810	1,336	1,124	1,081	1,174	1,116	1,081	1,333	1,306	1,627	-
국가채무 ¹⁾	2월	21,019	22,461	23,541	24,547	25,488	26,559	27,596	28,702	30,162	31,593	33,331	35,304
	9월		21,931	23,320	24,520	25,657	26,818	27,888	28,993	30,396	31,773	33,457	-
예산 총량(GDP 대비 %)													
수입	2월	16.3	16.0	17.3	17.5	17.3	17.2	17.6	17.9	17.8	17.7	17.6	17.5
	9월		15.5	16.9	17.3	17.3	17.3	17.8	18.1	18.0	17.9	17.8	-
지출	2월	31.2	26.3	21.9	21.5	20.9	21.1	21.4	21.6	22.4	22.1	22.8	23.2
	9월		24.1	23.0	22.2	21.8	22.0	22.1	22.1	22.7	22.3	23.0	-
재정적자	2월	14.9	10.3	4.6	4.0	3.6	4.0	3.7	3.7	4.6	4.4	5.2	5.7
	9월		8.6	6.1	4.9	4.5	4.7	4.3	4.0	4.7	4.4	5.3	-
국가채무 ¹⁾	2월	100.1	102.3	102.0	102.0	101.4	101.2	100.9	101.0	102.2	103.2	105.0	107.2
	9월		104.4	105.6	106.7	107.1	107.2	106.7	106.3	106.8	107.4	108.9	-

주: 1) 국가채무는 정부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방채무 규모를 의미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1 to 2031, 2021. 2.

CBO, An Update to The Budget Outlook: 2020 to 2030, 2020. 9.

- 장기적으로 이자비용 상승과 주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인해 GDP 대비 지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재량지출) 재량지출 예산권한은 전년 대비 15%(2,820억달러) 감소한 1.6조달러 전망 (GDP 대비 7.6%)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재량지출은 2021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코로나19 관련 지출의 감소에 기인함
- (의무지출) 2021년 의무지출은 이자지출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6%(2,240억달러) 감소한 4.1조달러 전망(GDP 대비 17.3%)

-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분야의 의무지출은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국가채무) 2020년 GDP 대비 비중 100%에 달한 국가채무는 2021년 말 102% 수준에 이른 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다시 증가해 2031년에는 역사상 가장 높은 107%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됨
 - * 2019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79%,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GDP 대비 35%를 기록함
- (실질GDP) 실질GDP는 전년 대비 4.6% 증가하고 향후 5년간 평균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향후 5년간 실질GDP 성장률은 실질 잠재GDP

성장률을 초과하지만, 2025년 이후 2031년까지 실질GDP 성장률은 실질 잠재GDP 성장률에 가까운 평균 1.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실업률) 2021년 실업률은 빠른 경제 회복에 기인해 전년 대비 2.4%p 감소한 5.7%로 전망
 - 빠른 경제 회복에 따라 민간 노동시장은 2022년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고, 취업자 수도 2024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임
- (인플레이션) 2021년 인플레이션은 1.5~1.6% 수준이고, 2023년 이후 2%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연방준비제도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장기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장기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이자율) 2021년 3개월물 국채금리는 전년 대비 0.3%p 감소한 0.1%, 10년물 국채금리는 0.2%p 증가한 1.1%로 전망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2024년 중반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3개월물의 금리도 이런 기조를 따라갈 것으로 보았음
- 미 의회 하원,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H.R. 1319) 통과 의결

<표 7> 미국 경제기준선 전망 비교(2021년 2월 vs 2020년 7월)

(단위: %, %p)

재정전망		실적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2025 ¹⁾	2026~2031 ²⁾
실질GDP ³⁾	2월	-3.5	4.6	2.9	2.2	2.3	1.7
	7월	-5.1	4.0	2.9	-	2.2	2.1
GDP ³⁾	2월	-2.3	6.3	4.9	4.2	4.4	3.8
	7월	-5.1	4.8	4.6	-	4.2	4.2
실업률 ⁴⁾	2월	8.1	5.7	5.0	4.7	4.2	4.1
	7월	10.6	8.4	7.1	-	6.3	4.8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³⁾	2월	1.2	1.6	1.8	1.9	2.0	2.1
	7월	0.8	1.0	1.6	-	1.9	1.9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³⁾	2월	1.4	1.5	1.8	1.9	2.0	2.1
	7월	1.0	0.9	1.5	-	1.8	1.9
3개월물 국채금리 ⁴⁾	2월	0.4	0.1	0.1	0.2	0.4	1.7
	7월	0.4	0.2	0.2	-	0.2	1.0
10년물 국채금리 ⁴⁾	2월	0.9	1.1	1.3	1.5	2.0	3.0
	7월	0.9	0.9	1.1	-	1.5	2.6

주: 1) 2020년 7월 자료는 2023~2024년 추정 값
 2) 2020년 7월 자료는 2025~2030년 추정 값
 3) 연간 퍼센트 변화
 4) 연 평균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1 to 2031, 2021. 2.
 CBO, An Update to the Economic Outlook: 2020 to 2030, 2020. 7.



(2021. 2. 27.)¹⁸⁾

* American Rescue Plan은 하원 예산위원회¹⁹⁾에서 초안이 발표(2021. 2. 19.)된 후, 하원에서 정식 발의(2021. 2. 24.)됨²⁰⁾

- (개요) ‘American Rescue Plan’의 총비용은 약 1.9조달러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팬데믹을 통제 하면서 강력하고 포용적인 경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내용) 동 계획은 바이러스 퇴치, 학교 재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가구 지원, 경제 타격을 입은 단체(중소기업, 운송업자 등) 등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²¹⁾
 - (바이러스 퇴치) 국가 백신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퇴치 관련 예산, 기타 바이러스 대응 개인 보호장비 및 주요 물자 공급, 치료 관련 투자 지원
 - (근로자 가구 지원) 재난지원금(1인당 1,400달러) 및 연방 최저임금 인상 등(근로자 약 2,700만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음)
 - (경제 타격 피해 그룹 지원)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재난 융자(EIDL²²⁾) 등을 통한 필사적인 지원(crucial

support)과 함께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²³⁾) 확대 계획

- 이와 함께 응급 의료인, 공중보건 종사자, 교사, 운송업자 등 필수 인력 등에 대한 지원 예산도 포함

[기타]

- 미 연방준비제도(Fed), FOMC 회의록 공개(2021. 2. 17.)²⁴⁾
 - FOMC 참석자(participants)²⁵⁾들은 1월 26~27일 개최된 FOMC 회의²⁶⁾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이 미국과 전 세계에 경제적 어려움을 여전히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
 - 최근 몇 달 동안 경제활동과 고용의 회복이 있었지만, 바이러스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확대로 여행, 레저와 같은 산업의 약세가 집중되었음
 - 지난 3월 이후 연방준비제도의 증권 매입²⁷⁾이 경제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자산매입의 속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것이라고 시사함

18) 미 의회 하원 예산위원회, <https://budget.house.gov/news/press-releases/new-report-bill-text-budget-committee-continues-pave-way-american-rescue-plan>

19) House Committee on the Budget(위원장: John Yarmuth)

20) 하원 표결 결과는 219:212로, 민주당에서 2개의 반대 표가 나옴

21) 미 의회 하원 예산위원회, <https://budget.house.gov/publications/report/help-way-budget-reconciliation-moves-american-rescue-plan-forward>

22)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23)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24) Fed,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2021. 1. 5.,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minutes20210127.htm>

25) 연준 이사 7명과 지역연준 총재 12명

26) 베이지북 1월호를 참고 바람

27) 연방준비제도가 매입하는 증권은 미 재무부 채권과 정부기관 발행 MBS임

- 위원(member)들은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를 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
 -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과 고용에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따라서 통화정책을 유지해 완전고용과 장기 평균 2% 인플레이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선임연구원, 서동규 연구원>

 **일본**

[기타]

- 스가 총리, 긴급사태선언 발령시한 연장 및 추가 대책 논의(2021. 2. 2.; 2021. 2. 12.)^{29), 30)}
 - 스가 총리는 제54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본부를 열고 토치기현을 제외한 긴급조치지역³¹⁾에 대해 3월 7일까지 비상사태를 연장함
 - 감염사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된 지역은 3월 7일 이전이라도 순차적으로 선언을 해제할 예정
 - 또한 2월 12일 제55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본부를 통해 추가 지원을 결정
 - 대기업 교대근무자 등의 근로자도 휴업지원금

- 대상으로 하며, 1월 7일 이전분 소급 지급
- 고용안정조성금 전액을 국가가 조성하는 특례 조치를 4월 말까지 유지하며, 특별히 사태가 심각한 업종은 6월 말까지 연장
- 2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특조법에 의해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에 대한 지원 및 행정처벌을 도입
 - 긴급사태선언 지역의 노동시간 단축 및 휴업 요청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 30만엔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코로나 감염에 의한 입원 거부 및 역학조사 거부 또한 과태료 대상

- 재무성, 「2021년 세제개정(안) 포인트」 발표(2021. 2. 4.)³²⁾
 - 개인소득세
 - 주택용자공제 특례 연장
 - 코로나 특례³³⁾에 의한 연장 조치를 경제대책으로 재연장
 - 셀프메디케이션 세제³⁴⁾ 적용기한 연장 재검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육아 관련 조성 등의 비과세 조치
 - 육아 지원 관점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육아 관련 시설·서비스 이용료 조성 비용을 비과세화

28) 기준금리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이사 7명, 뉴욕연준 총재 1명, 기타 지역연준 총재 11명 중 4명
 29) 수상관저, https://www.kantei.go.jp/jp/99_suga/actions/202102/02corona.html
 30) 수상관저, https://www.kantei.go.jp/jp/99_suga/actions/202102/12corona.html
 31)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 카나가와현, 기후현, 아이치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32) 재무성, 「令和3年度税制改正(案)のポイント」 https://www.mof.go.jp/tax_policy/publication/brochure/zeiseian21.htm
 33)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 제1호, 2020, p. 22 참고
 34) 예방접종 등 건강 유지 증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한 대책을 실시하는 자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스위치 OTC(처방약Rx에서 시판약 OTC으로의 전환) 구입비용을 연간 1.2만엔 이상 지불한 경우 구입비용(연간 10만엔 한도) 중 1.2만엔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



- 퇴직소득과세 적정화

- 근속연수 5년 이하의 법인 임원 등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공제액을 공제한 잔액 중 300만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2 과세 평준화 조치 적용에서 제외

● 재산과세

- 외국인에 대한 상속세 등 납세의무 거주기한 및 재산 범위 재검토
- 주택 취득 등 자금에 관한 증여세 비과세 조치 확충
 - 2021년 4월 이후의 비과세한도(최대 1,200만엔)를 2020년 비과세한도 수준(최대 1,500만엔)까지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
- 교육자금, 결혼·육아자금 일괄증여 관련 증여세 비과세 조치 2년 연장 검토

● 법인세³⁵⁾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투자촉진세제 창설
-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촉진세제의 창설
- 코로나를 감안한 임금인상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세제 재검토(인재확보 등 촉진 세제)
- 이월결손금의 공제 상한 특례 창설
- 활발한 연구개발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 세제 개정

● 소비과세

- 친환경차 자동차 증량세 감세 개정
- 항공기 연료세의 세율 인하

● 납세환경정비

- 세무 관계 서류 도장날인의무 원칙 및 예외조항에 대한 검토
- 전자장부 등 보존제도의 간략화
- 스마트폰을 사용한 결제 서비스 납부 수단의 창설

■ 재무성, 국채 및 차입금과 정부보증채무 현재 잔고 발표(2021. 2. 10.)³⁶⁾

- 재무성은 2020년 12월 말 기준 국채, 차입금, 정부 단기증권을 모두 포함한 국가채무잔고를 발표함 (<표 8> 참조)

■ 내각부, 2020년 4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2021. 2. 15.)³⁷⁾

- 2020년 4분기 GDP 1차 속보치 기준, 실질GDP 성장률은 3.0%(연율 12.7%), 명목GDP 성장률은 2.5%(연율 10.5%)로 나타남
- 2020년 실질GDP 성장률은 -4.8%, 명목GDP 성장률은 -3.9%로 나타남. 2020년 GDP 디플레이터는 0.9%, GDP 성장률의 내외수별 기여도는 실질 내수가 -3.8%, 외수가 -1.0%, 명목 내수가 -3.8%, 외수가 -0.2%로 나타남([그림 2] 참조)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정은 선임연구원>

35)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1월호, 2021, p. 30 참고

36) 재무성, <https://www.mof.go.jp/jgbs/reference/gbb/202012.html>

37) 내각부,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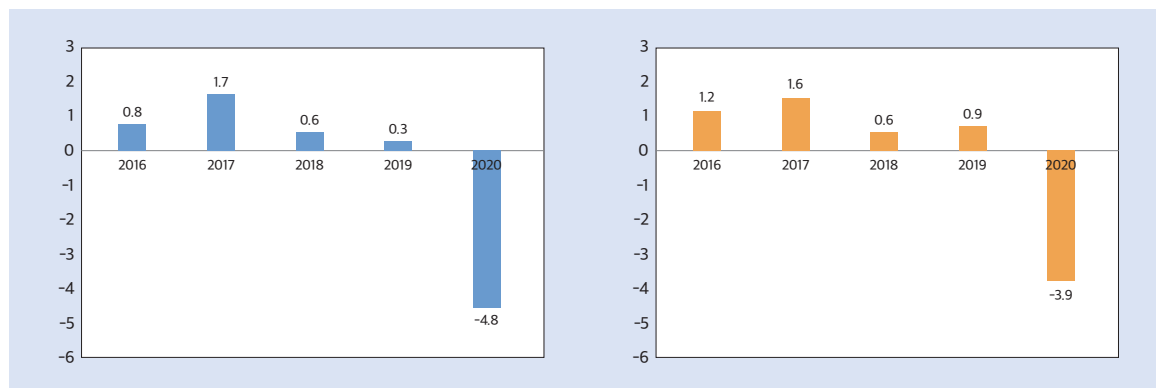
<표 8> 국채 및 차입금과 정부보증채무 현재 잔고(2020년 12월 말 현재)

(단위: 억엔)

구분	금액	전기 말 대비 증감액	전년도 말 대비 증감액
내국채	10,406,729	358,589	530,843
보통국채(중 부흥채)	9,204,312(64,687)	260,218(-81)	337,367(6,102)
장기국채(10년 이상)	7,082,554	29,470	90,729
중기국채(2~5년)	1,553,806	-26,274	-83,340
단기국채(1년 이하)	567,952	257,022	329,978
재정투융자특별회계국채	1,109,910	99,261	199,009
장기국채(10년 이상)	700,119	45,526	83,845
중기국채(2~5년)	409,790	53,735	115,164
교부국채	808	463	-62
출자·각출국채	38,684	-530	-3,466
주식회사 일본 정책투자은행 위기대응 업무국채	13,247	-	-
원자력손해배상·페로 등 지원기구 국채	39,769	-822	-2,005
차입금	517,462	18,528	-7,863
장기(1년 이상)	115,049	-5	-3,469
단기(1년 이하)	402,413	18,533	-4,394
정부단기증권	1,200,489	-151,598	456,301
합계	12,124,680	225,519	979,280

출처: 재무성, <https://www.mof.go.jp/jgbs/reference/gbb/202012.html>

[그림 2] 실질GDP 성장률(좌), 명목GDP 성장률(우)



출처: 내각부, 「2020年10~12月期四半期別 GDP 速報」(1次速報値), p. 7



독일

[예산·결산 등]

■ 연방 재무부, FY2020 잠정결산 발표(2021. 1. 19.)³⁸⁾

- (총지출) 2020년 재정지출은 4,434억유로로 기존 지출 목표 대비 651억유로 낮게 집계
- (총수입) 예상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목표보다 높은 세수(188억유로)가 발생하여 2020년 조세수입은 2,833억유로로 집계
- (채무) 202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계획보다 낮은 약 7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정책으로 필요 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마련한 것에 기인한다고 평가

[기타]

■ 경제에너지부, 2021년 경제전망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21) 발표(2021. 1. 27.)³⁹⁾

- (경제전망) 2021년 경제성장률은 2020년 10월 가을경제전망(Herbstprojektion)⁴⁰⁾ 대비 1.4%p 하락한 3.0%, 실업률은 5.8%로 전망
- (주요 경제 및 재정정책) 2021년 주요 정책방향

<표 9> FY2020 결산(잠정)

(단위: 억유로)

구분	2019	2020 (목표)	2020 (잠정)	목표치 대비 차이
총지출	3,571	5,085	4,434	-651
재정지출	3,436	5,085	4,434	-651
예비비	135	-	-	-
총수입	3,571	5,085	4,434	-651
조세수입	3,290	2,644	2,833	+188
세외수입	281	263	297	+34
예비비 인출	-	-	-	-
신규차입	-	2,718	1,305	-873

출처: 연방 재무부, ÖFFENTLICHE FINANZEN, 2021. 1. 19.

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회복 지원, 경제구조 강화를 선정

- (코로나19 위기 극복)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 안정화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해 광범위한 재정조치를 시행 중이며, 향후에도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적 지원 계획
- (경제회복 지원) 성장친화적이고 국제적으로 경쟁적이며 공정한 조세시스템은 위기 이후 빠른 회복을 지원할 것이며, 2021~2022년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 사회보장기여금 안정화, 재생에너지(EEG) 부담금 인하⁴¹⁾를 통해 경제회복을 지원할 계획
- (경제구조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상

38) 연방 재무부, ÖFFENTLICHE FINANZEN,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1/01/2021-01-19-vorlaeufiger-haushaltsabschluss-2020.html>, 검색일자: 2021. 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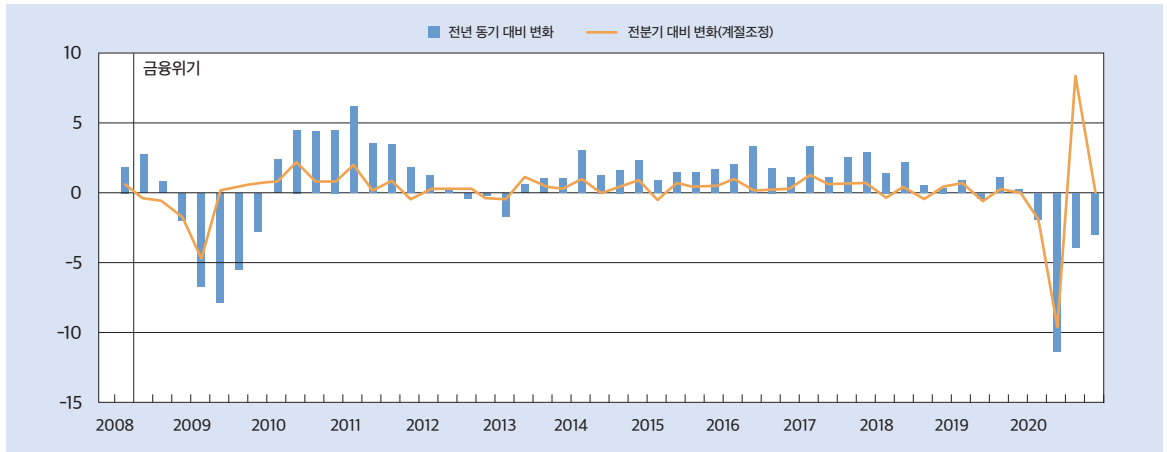
39) 경제에너지부, Pressemitteilung,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1/01/20210127-bundeskabinett-beschliesst-jahreswirtschaftsbericht-corona-krise-ueberwinden-wirtschaftliche-erholung-unterstuetzen-strukturen-staerken.html>, 검색일자: 2021. 2. 8.

4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20, 독일 편 참고, <https://www.bmwi.de/Redaktion/DE/Artikel/Wirtschaft/Projektionen-der-Bundesregierung/projektionen-der-bundesregierung-herbst-2020.html>

41) 2021년 6.5유로센트/kWh, 2022년 6.0유로센트/kWh

[그림 3] 독일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출처: 연방통계청, Corona-Statistiken, 2021. 1. 29.

<표 10> 2021 경제전망 주요 지표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전망)
실질GDP 성장률	0.6	-5.0	3.0
민간소비	1.6	-6.0	3.6
설비투자	0.5	-12.5	6.5
건설투자	3.8	1.5	1.9
내수	1.2	-4.1	3.1
수출	1.0	-9.9	6.4
수입	2.6	-8.6	7.2
실업률	5.0	5.9	5.8

출처: 경제에너지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21, 2021. 1. 27.

향 조정(2030년 50%→65%까지 상향 조정), 국가수소전략 투자 강화,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독일 경제의 중장기적 강화에 중점

- 알트마이어 장관은 약한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 위기를 더욱 현대적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함을 강조

- 연방통계청, 2020년 4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 및 고용률 발표(2021. 1. 29.; 2021. 2. 18.)⁴²⁾

- 독일의 2020년 3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 증가(계절조정)하여 전분기 큰 폭의 성장세(+8.5%)를 기록한 이후 둔화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는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4분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과 그에 따른 락다운 시행으로 회복세가 둔화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특히 민간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⁴³⁾

42) 연방 통계청, Press release, 2021. 1. 29.,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1/01/PD21_040_811.html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1/02/PD21_072_13321.html, 검색일자: 2021. 2. 22.

43) 세부 데이터는 2월 24일 발표 예정



- 2020년 4분기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 (0.0%, 계절조정, +2만 1천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선임연구원>



프랑스

[예산·결산 등]

■ 2020년 예산 집행결과 발표(2021. 2. 3.)⁴⁴⁾

- 2020년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1,781억유로로 전년 대비 853억유로 증가함(<표 11> 참조)
 - 경제위기 대응의 영향으로 2020년 재정지출은 3,877억유로로 전년 대비 516억유로 증가
 - 부분실업⁴⁵⁾ 지원에 178억유로 증가, 기업 지원을 위한 연대 기금 자금 조달에 118억유로 증가, 기타 재정지원에 83억유로 증가 등
 - 경제활동의 감소로 인해 2020년 재정수입은 2,077억유로로 전년 대비 876억유로 감소
 - 소비 감소로 부가가치세 수입이 122억유로, 법인세는 119억유로 감소
 - 여행 제한 및 봉쇄 조치로 인해 에너지제품 소비세(TICPE)는 57억유로 감소

[기타]

■ 2020년 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21. 1. 29.)⁴⁶⁾

- 2020년 4분기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2차 봉쇄 조치*로 인해 3분기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2020년 연간 성장률은 -8.3%로 나타남

* 프랑스는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2차 봉쇄 조치(전국 이동 제한령)를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11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 바 있음

-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시행된 봉쇄 조치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2020년 3분기 18.5%를 기록한 이후 4분기에 -1.3%로 급감함

• 이는 3~5월 1차 봉쇄 조치와 비교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완만한 수준

- 2차 봉쇄의 영향은 가계소비지출에서 크게 나타남(3분기 +18.2%, 4분기 -5.4%)
- 수출 증가율(3분기 21.9%, 4분기 4.8%)과 수입 증가율(3분기 16.2%, 4분기 1.3%) 모두 큰 폭으로 하락

■ 프랑스 통계청, 2020년 4분기 실업률 발표(2021. 2. 16.)⁴⁷⁾

- 2020년 4분기 프랑스 실업률은 8.0%로 전분기 대비 1.1%p, 전년 동기 대비 0.1%p 하락함
 - 모든 연령과 성별에서 실업률이 하락하였고, 특히 15~25세 실업률이 크게 감소

44)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1 décembre 2020, 2021. 2. 3., https://www.budget.gouv.fr/files/files/publications%20direction/SMB/SMB%202020/situation_mensuelle_budget_Etat_31122020.pdf

45) 부분실업이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일정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

46) 프랑스 통계청, GDP declined in Q4 2020 (- 1.3%), marked by the second lockdown; over the year 2020, GDP declined by 8.3%, 2021. 1. 29.,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5018412>

47) 프랑스 통계청, In Q4 2020, the unemployment rate fell back again to 8.0 %, 2021. 2. 16.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5056886>

<표 11> FY 2020 예산집행 결과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19년 대비 2020년
재정수지	-76,877	-96,912	-172,678	-
재정지출	390,692	397,983	455,368	14.4%
재정수입	313,786	301,071	282,690	-6.1%
특별회계	824	4,075	-5,421	-
총재정수지	-76,053	-92,837	-178,099	-

출처: SITUATION MENSUELLE BUDGÉTAIRE AU 30 décembre 2020

<표 12> 프랑스 분기별 성장률¹⁾

(단위: 전 분기 대비 %, %p)

구분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2019년	2020년	
GDP 성장률	-5.9	-13.7	18.5	-1.3	1.5	-8.3	
가계소비	-5.7	-11.6	18.2	-5.4	1.5	-7.1	
정부소비	-2.8	-10.0	14.6	-0.4	1.7	-3.1	
총고정자본형성 ²⁾ (GFCF)	-10.6	-14.7	24.0	2.4	4.3	-9.8	
수출	-6.9	-25.2	21.9	4.8	1.8	-16.7	
수입	-5.9	-13.7	18.5	-1.3	1.5	-8.3	
GDP 기여도(%p)	국내수요 ³⁾	-6.3	-12.2	19.4	-2.7	2.2	-7.0
	재고투자	0.7	0.8	-1.7	0.4	-0.4	0.2
	대외무역	-0.3	-2.3	0.8	0.9	-0.3	-1.5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3) 재고투자 제외

출처: 프랑스 통계청, 2021. 1. 29.

<표 13> 프랑스 분기별 실업률

(단위: %, %p, 천명)

구분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증감률		2020년 4분기 실업자 수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업률 전체	9.1	8.0	-1.1	-0.1	2,353
15~24세	22.0	18.4	-3.6	-1.5	509
25~49세	8.5	7.5	-1.0	0.1	1,324
50세 이상	6.1	5.7	-0.4	-0.1	519
남자	9.1	8.0	-1.1	-0.2	1,215
15~24세	21.8	19.0	-2.8	-1.6	279
25~49세	8.6	7.4	-1.2	0.2	672
50세 이상	5.9	5.7	-0.2	-0.3	264
여자	9.1	7.9	-1.2	-0.1	1,138
15~24세	22.3	17.7	-4.6	-1.3	230
25~49세	8.5	7.6	-0.9	0.0	652
50세 이상	6.4	5.7	-0.7	0.1	255
장기실업률	3.3	3.1	-0.2	-0.1	927
고용률	65.0	65.6	0.6	-0.4	-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2021. 2. 13.



-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인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장기실업률은 3.1%로, 전분기 대비 0.2%p, 전년 동기 대비 0.1%p 감소함
- 고용률은 65.6%로 직전 분기 대비 0.6%p 상승함
- 두 번째 봉쇄 조치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 봉쇄 조치에 비해 다소 완만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선임연구원>

- (금액) 기업은 수출입 관련 실질적 지원을 받기 위해 최대 2천파운드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용도) 보조금은 EU와의 무역을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세관 절차, 원산지 규정, 수입 VAT 등 관련 교육과 전문가 자문을 받는 데 사용 가능

- (기대 효과) 기업이 4월과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수입품 통제(import controls) 절차*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국경운영모델(Border Operating Model)⁴⁹⁾을 바탕으로 EU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통제를 단계적으로 도입(3단계: 1월, 4월, 7월)



영국

[기타]

■ 중소기업 브렉시트 지원 자금(SME Brexit Support Fund) 발표(2021. 2. 11.)⁴⁸⁾

- (목적) 영국-EU 간 무역 규정 변경 이후 EU와의 거래에서 새로운 세관 절차, 원산지 규정, VAT 규정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지원
- (지원 내용) 정부는 2천만파운드 규모의 중소기업 브렉시트 지원 자금(SME Brexit Support Fund)을 통해 무역 규정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을 지원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잉글랜드의 연료 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Sustainable warmth: protecting vulnerable households in England) 발표(2021. 2. 11.)⁵⁰⁾

- (개요) 정부는 잉글랜드 지역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에너지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연료 빈곤층 지원 전략(Sustainable warmth: protecting vulnerable households in England)을 발표함
- (목적) 저소득 가구의 연료 빈곤⁵¹⁾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중립(Net Zero)으로의 전환에서 연료 빈곤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

48) Cabinet Office, Government announces £20 million SME Brexit Support Fund, 2021. 2. 11.,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announces-20-million-sme-brexit-support-fund>

49) 브렉시트 전환기간 이후 EU-영국 간 국경 운영방식에 대한 지침

50)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Sustainable warmth: protecting vulnerable households in England, 2021. 2. 11. <https://www.gov.uk/government/news/sustainable-warmth-protecting-vulnerable-households-in-england>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ustainable-warmth-protecting-vulnerable-households-in-england/sustainable-warmth-protecting-vulnerable-households-in-england-accessible-web-version>

51) 연료 빈곤을 적정 비용으로 난방을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의 문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에 연료 빈곤층 지원 전략(Cutting the cost of keeping warm: a fuel poverty strategy for England)을 발표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취약계층 에너지 소비자의 요금 부담 경감과 친환경적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
 - 1억 5천만파운드의 주택 개선 보조금(Home Upgrade Grant), 20억파운드의 친환경 주택 보조금(Green Homes Grant)⁵²⁾을 통해 가구의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기여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제도(Energy Company Obligation: ECO)⁵³⁾의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2022~2026년 동안 연간 규모를 6억 4천만파운드에서 10억파운드로 확대
 - 난방비 할인제도(Warm Home Discount)⁵⁴⁾를 확대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75만가구를 추가로 지원(총 270만가구)
 - 민간 임대주택의 연료효율 규제 강화로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100억파운드 이상의 투자 유도 등
- 영국 정부, 잉여 공공부지 및 공공건물 매각 목표 (2015~2020년) 초과 달성(2021. 2. 5.)⁵⁵⁾
 - (배경) 정부는 2015년에 신규 주택 건설, 상업 용도 전환, 신규 개방 공간(open space) 조성 등 재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공공 잉여 부지(surplus

- site)를 매각하여 2020년까지 5년간 50억파운드를 조달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또한 ‘2018 국유부동산 전략(Government Estate Strategy 2018)’에서 국유 부동산의 효율성 제고, 매각 수입 창출,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잉여 부지 제공을 포함한 조치를 발표하고 50억파운드의 매각 목표를 재확인함
- (실적) 지난 5년간 정부는 당초 목표를 2억파운드 초과한 52억파운드 금액의 잉여 공공부지 및 공공건물을 매각함
 - 5년간 토지 및 부동산 처분 프로그램을 통해 더 이상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5,200헥타르 이상의 공공부문 토지와 수백 개의 유휴 건물을 매각함
 - 지난 해 총 277건, 지난 5년간 총 2,206건의 잉여 부지가 매각됨
 - 약 1/4은 민간의 개인 또는 소기업에 매각
 - 이를 통해 조달된 52억파운드는 다시 공공재정으로 들어가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선임연구원>

52) 이 중 친환경 주택 보조금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주택 소유자에게 에너지 효율 및 저탄소 난방기구 설치 시 최대 1만파운드를 제공하는 제도임

53) 대형 에너지 공급자들이 난방, 단열, 기타 에너지 효율 제고 수단을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구에 설치하도록 의무 부과

54) 에너지 회사가 저소득 연금 수급자 및 기타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에 대해 140파운드의 리베이트를 의무적으로 제공

55) Cabinet Office, Five year project to sell surplus public sites exceeds its target, 2021. 2. 5, <https://www.gov.uk/government/news/five-year-project-to-sell-surplus-public-sites-exceeds-its-target>

Cabinet Office, Transparency Report-Governments land and property disposals in 2019/20 and retrospective reporting for 2018/19, 2017/18 and 2016/17, 2020. 12,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53799/Government_s_land_and_property_disposals_in_2019_20_and_retrospective_reporting_for_2018_19_2017_18_and_2016_17.pdf



중국

[예산·결산 등]

■ 재정부, 2020년 재정 수입 및 지출⁵⁶⁾ 상황(财政收支情况) 발표(2021. 1. 28.)⁵⁷⁾

- 2020년 일반공공예산 수입⁵⁸⁾은 18조 2,895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 수입은 8조 2,771억위안과 10조 124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각각 7.3%, 0.9% 감소
- 2020년 일반공공예산 지출⁵⁹⁾은 24조 5,588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 지출⁶⁰⁾은 3조 5,096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 지방정부 지출⁶¹⁾ 21조 492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
 - 사회보장·고용 지출 3조 2,581억위안(전년 대비 10.9% 증가)
 - 보건의료 지출 1조 9,201억위안(전년 대비 15.2% 증가)
 -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지출 6,317억위안(전년 대비 14.1% 감소)

- 도시농촌 지역사회 지출 1조 9,917억위안(전년 대비 20.0% 감소)
- 채무 이자지출 9,829억위안(전년 대비 16.4% 증가)

[기타]

■ 중국 인민은행, 2020년 4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中国货币政策执行报告) 발표(2021. 2. 8.)⁶²⁾

-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집행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현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유동성은 여유 있는 상태 ▲금융기관 대출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증가하였고 대출이자율은 하락하였으며 ▲통화량(M2)과 사회용자 규모의 증가 수준^{63), 64)}은 적절하다고 평가
 - 2020년 말 기준 위안화 대출 잔액은 172조 7천 억위안 규모로 작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19조 6천억위안의 신규 위안화 대출이 실행됨
 - 2020년 말 기준 제조기업 중장기대출 잔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5.2%로 14개월 연속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56) 재정의 구조는 일반공공예산, 정부성기금예산, 국유자본경영예산, 사회보험기금예산으로 구성됨

57) 중국 재정부, http://gks.mof.gov.cn/tongjishuju/202101/t20210128_3650522.htm, 최종 검색일자: 2021. 2. 22.

58)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조세수입(18개 세목)과 비조세수입(8개 세목)으로 구분

59) 재정지출은 중앙정부 지출과 지방정부 지출로 구분,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일반공공서비스, 외교, 국방, 공공안전, 교육, 과학기술, 문화체육 및 미디어, 사회보장 및 취업 등 총 22개 항목으로 구성

60) 주로 국가의 안전보장, 국가기관과 관련된 경비, 거시경제정책과 관련된 지출 및 중앙정부 소관 사업 지출 등이 해당

61) 지방정부기구의 경상적 지출, 지역경제 및 사회사업의 발전과 관련된 지출 등이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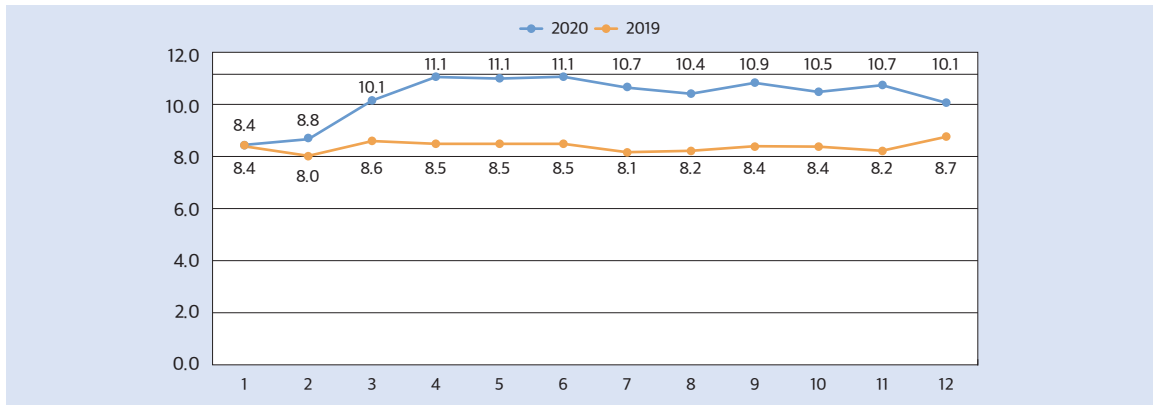
62) 중국 인민은행, <http://www.pbc.gov.cn/zhengcehuobisi/125207/125227/125957/4021036/4190887/2021020821282167078.pdf>, 최종 검색일자: 2021. 2. 21.

63)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통화량을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하는 통화량목표제 방식을 운영함. 그러나 선진 중앙은행들과 유사하게 단기 금리를 운영수단으로 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음(한국은행, 「중국경제정책: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과 3대 과제」, 『국제경제리뷰』 제2017-4호 참조)

64) 중국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통화량(M2)과 사회용자 규모의 증가율을 명목경제 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발표

[그림 4] 2020년 중국 월별 M2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출처: 중국인민은행, 货币统计概览 바탕으로 제작됨

- 포용대출(普惠小微企业贷款) 잔액은 15조 1천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
- 2020년 말 기준 통화량(M2)은 218조 7천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하였으며 M2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4%p 증가(그림4 참조)
- 인민은행은 ‘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며(不急转弯) 정상적인 통화정책 여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 통화량(M2)과 사회용자 규모의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에 상응하도록 조정하며 거시레버리지 비율⁶⁵⁾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제시
- ‘대수만관(大水漫灌)⁶⁶⁾하지 않고 ‘통화공급밸브(货币供应总闸门)를 잘 조일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유동성 조절 가능성 시사

■ 재무부, 2020년 지방정부채권 발행 및 채무잔고 통계 발표(2020. 1. 26.)⁶⁷⁾

- 2020년 발행된 지방정부채권 규모는 총 6조 4,438억위안으로 신규로 발행된 지방정부채권은 4조 5,525억위안 규모이며, 채용자채권 발행 규모는 1조 8,913억위안으로 발표
- 2020년에 발행된 지방정부채권의 평균 만기 기간 14.7년
- 2020년에 발행된 지방정부채권 평균 금리 3.40%
- 2020년 말 기준 전국 지방정부 채무잔고는 25조 6,615억위안으로 집계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재원 연구원>

65) 거시레버리지 비율(宏观杠杆率)이란, GDP 대비 총부채 비율(총부채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의 합)로 중국의 거시레버리지 비율은 2020년 말 기준 270.1%로 전년 말(246.5%)에 비해 23.6%p 증가(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 NIFD季报 - 2020年度宏观杠杆率)

66) ‘물을 대량으로 쏟아붓는다’는 의미로 양적 완화나 대량의 유동성 공급을 뜻함. 2019년 말까지 통화정책집행보고서에는 ‘대수만관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꾸준히 등장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삭제되었다가 2020년 3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에 재등장하였음. 비슷한 맥락에서 ‘통화공급밸브를 잘 조일 것’이라는 문구도 삭제되었다가 2020년 3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에 다시 등장함

67) 중국 재정부, http://yss.mof.gov.cn/zhuantianmu/dfzgj/sj/jj/202101/t20210125_3649040.htm, 최종 검색일자: 2021. 2. 23.

재정포럼

2021년 3월호 통권 제297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김서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21년 3월 15일 발행 / 제25권 제3호(통권 제297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0. 05. 06.

- 0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